

2016 공인회계사 KACPA Journal

Korean American Certified Accountants Society of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Vol. 17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 재정계획을 열어주는 프리미엄 재정전문서비스

재정설계 / 은퇴연금 및 상속계획 / 보험
기업상속 및 직원 베니핏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고객과 기업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신뢰성있게 고객의 재정적 안정을 책임지는
재정 보험 전문인
- 김종식 (Jon Kim)



34년동안 변함없이 재정관리 및 은퇴/상속계획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은퇴계획 ▶상속계획 ▶리빙 트러스트 ▶기업상속 및 베니핏 프로그램 (401K, Pension Plan)
- ▶뮤추얼 펀드 투자 및 관리 ▶생명보험 ▶장기 간호보험 ▶장애소득보험
- ▶건강보험 ▶비영리 단체 기부(CRT) 및 절세계획 ▶대학 학자금 설계
- ▶Special Needs Trust & Conservatorship

3530 Wilshire Blvd. Suite 1050,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52-6222 / Cell: (213) 792-9100
Email: jonkim@financialguide.com
<http://www.financialguide.com/jong-kim>



Fraser Financial Group

김종식
Jongsik (Jon) Kim, FSCP, LUTCF, FSS, CLTC
Financial Services Certified Professional
Investment Advisor Representative
Certified in Long-Term Care
Special Care Planner
CA Lic #0638640



Fraser Financial Group은 세계적 경영 다각화를 이루는 금융 서비스 그룹인 Massachusetts Mutual Life Insurance 기업(매스뮤추얼)의 에이전시로서 광범위한 재정상품과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매스뮤추얼의 기업목표는 재정상품과 서비스를 통한 넓은 안목으로 개인, 기업, 공공기관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추어진 다양한 범위의 재정적 해결점을 오래도록 증진시키고 끊임없이 쇄신하는 것입니다. 매스뮤추얼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재정적 독립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MassMutual Financial Group is a marketing name for Massachusetts Mutual Life Insurance Company (MassMutual) and its affiliated companies and sales representatives. 8383 Wilshire Blvd., Suite 600, Beverly Hills, CA 90211. (323)965-6300 Insurance offered through MassMutual and other fine companies.

KACPA Journal Vol.17 / 2016

Korean American CPA Society of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
<http://kacpa.org>

- 5 **발간사 / Message from the President**
안병찬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KACPA) 회장
Byung Chan Ahn, KACPA President
- 8 **감가상각을 통한 승용차 경비처리**
by. 송재선, 공인회계사
- 10 **한국에 있는 친인척으로부터의 상속과 증여**
by. 심충진 교수(건국대학교 경영대학)
- 12 **키머니 관행의 변화를 바라보며**
by. 최윤화 Uniti Bank 행장
- 13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세 보고**
by. Gary Son, 공인회계사
- 14 **부동산 임대수익과 세금계산**
by. 차비호, 공인회계사
- 15 **가업승계 성공의 마지막 관문**
by. 김장식, 공인회계사
- 16 **US Worldwide Income Tax and Estate Tax for Nonresidents**
by. Steven Kang, CPA
- 18 **Built in Gai Tax를 고려한 주식회사 자산 매각계획**
by. 정동완, 공인회계사
- 20 **Before your client decides to litigate, consider these factors**
by. 방일영, 변호사
- 22 **과태료에 대한 이해**
by. Ann Lee, 공인회계사
- 23 **Federal Work Opportunity Tax Credit**
by. Charles Lee, 공인회계사
- 26 **공정임금과 안전직장에 관한 대통령 행정지시**
by. 조재호, 변호사
- 28 **TRUST FUNDING의 중요성**
by. 김윤한, 공인회계사 / 변호사
- 29 **회사형태 결정 창업부터 신중해야한다.**
by. 안소연, 공인회계사
- 31 **투자와 삶**
by. 이원창, California Bank & Trust 지점장
- 32 **이중지위 납세자의 세금보고**
by. 강익수, 공인회계사
- 34 **Dealing with Cloud Computing Arrangements**
by. Richard Wang, CPA
- 35 **귀한 선물**
by. 김종천, 공인회계사
- 36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사례**
by. 이승수, 뉴욕 세무관
- 37 **2015 & 2016 개정 세법**
by. James Cha, 공인회계사
- 38 **연말 절세 계획**
by. 최준순, 공인회계사
- 39 **나에게 보내는 새해 인사**
by. 지니 강, 공인회계사
- 40 **세무 일람표(Tax Rate Schedules)**
- 41 **미국 50개주 주 정부 웹사이트 정보와 전화번호 명부**
- 42 **회계와 세무정보 웹사이트**
- 44 **2015-2016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 사업활동
2015-2016 KACPA Business Events**
- 46 **KACPA Board of Directors List 2015-2016**
- 48 **제 33대 신임 회장단**
- 47 **KACPA 활동 사진**
- 52 **Tax deduction and credits**
- 56 **세무캘린더**

■ 발행인 : 안병찬
■ 편집인 : 게리슨, 지니강, 최준순

Horizons

US·UK [hɒrɪzənz] [명사]
(지식 따위의) 범위, 시야, 또는 지평선

활기찬 아침을 여는 고객의 비즈니스에도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커뮤니티에도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한미은행의 H는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야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H**는 무엇입니까?

지금 미 전역 한미은행 지점에서
당신만을 위한 H를 만나 보십시오

발간사

정 보정보시대라는 말에 걸 맞게 정보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정보가 풍부하다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정보가 너무 많게 되면, 넘쳐나는 정보의 진위와 적절한 정보를 찾아내야 하는 새로운 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확실히 빠르게 발전하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정보를 갖지 않으면 뒤쳐지는 현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현대는 이런 요구를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에서는 그동안 이런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추어 다양한 방법으로 동포사회와 함께 해 왔습니다. 여러 협회 활동 중에서 저희 협회에서는 지난 16년 동안 협회 회원들의 교육과 업무 향상을 위해서 "KACPA Journal"이라는 협회 저널을 발간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 협회 저널은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회원들과 관련 전문인들에게 중요한 정보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최근 이 저널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협회 회원 중심에서 동포사회로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금년부터 전문인들은 물론 동포 기업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보지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KACPA Journal "이라는 제목에 "Certified Public Accountant"의 한글 명칭인 "공인회계사"를 저널의 이름에 추가해서 함께 사용함으로써 동포사회에 익숙한 이름으로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KACPA Journal "공인회계사"는 지난 33년간 동포사회와 함께 해 온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의 회원들이 만드는 세무·회계 관련된 정보지입니다. 본 저널이 전문인들의 질적인 향상은 물론 우리 동포사회에 건전한 재정문화와 세무·회계 관련된 중요한 정보 원천이 되는 정보지가 되도록 저희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회원들은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한된 시간과 지면의 한계로 전문인들과 동포기업인들이 더 필요로 하는 정보는 다음 저널에 추가할 것을 기약하면서, KACPA Journal "공인회계사"에 실린 정보들이 전문인들과 동포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저널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KACPA Publication Coordinator 지니강, 최준순 회계사님께 감사드리고, H Magazine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안병찬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 회장

Byung Chan Ahn President

Korean American CPA Society of Sothern California



전문가는 다르다! CBB Bank는 다르다!

www.cbb-bank.com

비즈니스 전문은행, CBB Bank의 SBA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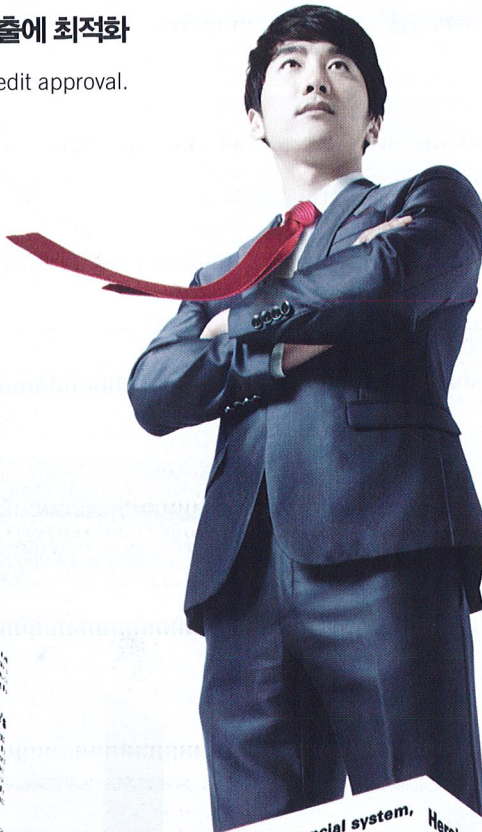
모든 SBA론은 비즈니스 전문은행과 함께하십시오.
비즈니스의 확장이나 인수, 비즈니스의 시작에도,
CBB Bank는 언제나 도전하는 당신의 비즈니스와 함께합니다.
생각이 다른 은행, CBB Bank

SBA 7(A) / SBA 504 Loan Program*

- SBA 승인없이 자체 심사료 신속 대출 (PLP Lender)
-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이해, 빠른 결정, 빠른 프로세스
- 한인 유일의 비즈니스 전문은행으로서, 비즈니스 대출에 최적화
- 브로커 리퍼 환영 *All loans are subject to credit approval.

지금 바로 문의하십시오!

SBA 전문상담 (323) 988-3000



in the last trading session, US stocks rose in all markets
Buying Back Stock

Jeffries Starts Coverage on Biotech's 3 Top Stocks to Buy Now

Economists Add Hopes for a 'U-Turn' in Oil Market

PLP Lender로서 자체 심사만으로 신속 대출

2015 최고 10대 상장 커뮤니티 은행

Here's when economists expect to see the next U.S. recession

The biggest remaining risk in today's financial system, hiding in plain sight

★★★★ 금융기관 전문 신용평가사 '바우어 파이낸셜' 최고등급 별 5개 획득

one conclusion

Crude oil futures fall \$44.63 a barrel, fall to one million

2013년, 2014년 연속 전미 최고 20대 SBA 대출기관 선정

A news service for the Capitol described the law as a "match-between the Addition and hedge"

Outlook for US economy, wages and hiring

Crude oil futures fall \$44.63 a barrel, fall to one million

Here's when economists expect to see the next U.S. recession

The biggest remaining risk in today's financial system, hiding in plain sight

★★★★ 금융기관 전문 신용평가사 '바우어 파이낸셜' 최고등급 별 5개 획득

one conclusion

Crude oil futures fall \$44.63 a barrel, fall to one million

2013년, 2014년 연속 전미 최고 20대 SBA 대출기관 선정

A news service for the Capitol described the law as a "match-between the Addition and hedge"

Outlook for US economy, wages and hiring

A
PORTFOLIO
FILLED WITH ONLY
INVESTMENT PRODUCTS
DOESN'T MAKE SENSE EITHER.

THAT'S THE METLIFE PERSPECTIVE.

When you work with a MetLife Premier Client Group financial representative, you'll learn that we look at diversification differently. We believe a truly diversified portfolio contains more than just investment products, so you can not only focus on growing your assets but safeguarding them too. Let us put the MetLife Perspective to work for you.

Credence Financial Group
An office of MetLife and part of the
MetLife Premier Client Group
3435 Wilshire Blvd. #2900
Los Angeles, CA 90010
www.credence-financial.com
213-632-2200

MetLife

MetLife Premier Client Group

Diversification does not ensure a profit or guarantee against a loss. The MetLife Premier Client Group is a distribution channel of and insurance products are issued by Metropolitan Life Insurance Company [MLIC], New York, NY 10166. Product guarantees are subject to the financial strength and claims-paying ability of the issuing insurance company. Securities are offered through MetLife Securities, Inc. [MSI], 1095 Avenue of the Americas, NY, NY 10036. MLIC and MSI are MetLife companies. 1512330955 CS L0415417560[exp0317][All States]



송재선, 공인회계사

감가상각을 통한 승용차 (Passenger Automobiles) 경비처리

세법상의 승용차(Passenger Automobile)는 어떻게 정의할까? 세법에서 정하는 승용차의 구분에 따라 감가상각(Depreciation)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승용차에 대한 정의를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법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춘 것을 승용차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바퀴가 네개로서 (Four - Wheeled Vehicles),

둘째, 일반도로나 Highways 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 졌고,

셋째, 승용차 무게가 6,000 Pounds 나 그 이하일 경우이고, 승용차의 무게는 Gross Vehicle Weight Rating으로 승용차 운전석 문 옆쪽에 Pounds 가 표시되어 있다.

넷째, Truck이나 Van일 경우에 6,000 Pounds 이하인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Sport Utility Vehicle 은 Truck 으로 간주한다.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Taxies 나 Limousine 등은 여기에 적용 되지 않는다.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의 성격에 따라 적용방법에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승용차(Passenger Automobile) 감가상각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다. 승용차인 경우 승용차의 사업상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 현상을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쓰는 감가상각 방법은 IRS에서 쓰는 MACRS 방법이고 1987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승용차는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승용차 경비 처리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 mileage에 IRS 에서 규정한 Rate을 곱하는 방법과

둘째는 실제 사용한 경비와 승용차 감가상각비를 더해 계산하는 방법이다.

납세자는 이 두 방법 중 납세자에게 혜택이 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첫째 방법인 Mileage에 Rate을 곱하는 방법은 Business Mileage 기록이 잘되어 있으면 쉽게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지에서 사업장소까지의 오고가는 Mileage (Commuting Expense)는 포함되지 않는다. 2015년 기준으로 승용차 Business Mileage Rate 은 Mileage당 0.575 cent 이다. 참고로 2015 년에 IRS 에서 발표한 사용 목적에 따른 Mileage Rate들은 다음과 같다.

- Business mileage rate : 0,575
- Moving mileage rate : 0,23
- Medical mileage rate : 0,23
- Charitable mileage rate : 0,14

다음은 실제로 들어간 경비로 계산하는 방법인데 경비로는 감가상각과 Gas, Oil, Insurance, Registration, Repair and Parking Fee 등이 있다. 이런 경비등은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들과 Business 사용 Mileage기록 등이 있으면 된다. 승용차의 감가상각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은 Purchase Price 에 Title과 Registration Fee, Sales Tax 등을 포함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 방법은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승용차의 감가상각 계산방법은 좀 복잡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승용차는 5년에 200% Declining Balance로 감가상각 할 수 있다 (MACRS). 그런데 Deduction 할 수 있는 Amount는 일반 감가상각과 Limitation 중 적은 Amount 로 해야한다.

\$30,000 승용차를 예로 들면 2014년 4월5일부터 Business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아래표와 같이 계산된다.

| Year | 일반 감가상각비 | Luxury Car Limitation | Deduction Amount | Unrecovered Basis |
|------|----------|-----------------------|------------------|-------------------|
| 2014 | \$ 6,000 | \$ 3,160 | \$ 3,160 | \$ 26,840 |
| 2015 | \$ 9,600 | \$ 5,100 | \$ 5,100 | \$ 21,740 |
| 2016 | \$ 5,760 | \$ 3,050 | \$ 3,050 | \$ 18,690 |
| 2017 | \$ 3,456 | \$ 1,875 | \$ 1,875 | \$ 16,815 |
| 2018 | \$ 3,456 | \$ 1,875 | \$ 1,875 | \$ 14,940 |
| 2019 | \$ 1,728 | \$ 1,875 | \$ 1,728 | \$ 13,212 |

Luxury Car Limitation(고급승용차 공제 제한)과 일반 감가상각비 중 적은 금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

만약에 위와 같은 예에 첫 해 50 % Bonus Depreciation를 Claim 했고, Business 로 사용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Year | 일반 감가상각비 | Luxury Car Limitation | Deduction Amount | Unrecovered Basis |
|------|-----------|-----------------------|------------------|-------------------|
| 2013 | \$ 18,000 | \$ 11,160 | \$ 11,160 | \$ 18,840 |
| 2014 | \$ 4,800 | \$ 5,100 | \$ 4,800 | \$ 14,040 |
| 2015 | \$ 2,880 | \$ 3,050 | \$ 2,880 | \$ 11,160 |
| 2016 | \$ 1,728 | \$ 1,875 | \$ 1,728 | \$ 9,432 |
| 2017 | \$ 1,728 | \$ 1,875 | \$ 1,728 | \$ 7,704 |
| 2018 | \$ 864 | \$ 1,875 | \$ 864 | \$ 6,840 |

이 경우에도 Luxury Car Limitation과 일반 감가상각비 중 적은 금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승용차의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 다른 고정재산들의 감가상각과는 다르게 취급되고있다. 결국 납세자들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 Purchase를 할 것인가 또는 Lease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어떤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이 절세에 가장 좋은지에 대한 결정할 때 이런 감가상각의 원리를 이해하고 결정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Say **Yes** to



한인 운영 Payroll Service 전문 회사 PayYes Payroll Service

PayYes는 페이를 전문회사로써 차별화된 서비스와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프리미엄 수준의 급여 지급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1095-C REPORTING SERVICE: Affordable Care Act(ACA)에 의한 ERS Reporting 자료 분석 및 IRS 보고 (1094-C/1095C)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DIRECT DEPOSIT SERVICE: 직원 급여는 수표 지급 및 직원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이 가능합니다.
- EFT SERVICE : 전산화 된 종업원 세금 자동 납부(EFTPS)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각종 퇴직/보험 서비스: 401K 및 Workers Compensation 등 종업원의 베네핏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해드립니다.
- TIME AND ATTENDANCE SYSTEM : PayYes 에서 자체 개발 한 Time Clock Machine으로 정확한 급여 계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Pay Yes에서 제공하는 혜택들

- 고객님의 개인 정보 보호와 제공 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직원 급여과 관련된 Report를 고객이 원하시는 양식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친절한 한국어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타사들 보다 저렴한 서비스 비용으로 모든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20년의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님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ePayYe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213-738-1200 또는 info@epayyes.com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PayYes Payroll Service, Inc.
3435 Wilshire Blvd. Suite 6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738. 1200 FAX. 213. 738. 6062 www.epayyes.com



심충진 교수(건국대학교 경영대학)

한국에 있는 친인척으로부터의 상속과 증여



I. 머리말

세금은 기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확보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될 경우 국민에게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금품을 말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대 전제하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소득이 창출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금이 따라 붙는다. 재미동포도 미국에서 소득이 창출되면 미국세법에 의해 세금을 부담하지만 한국에서 소득이 창출될 경우에는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한국에 있는 친인척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상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세법상 개인의 구분과 과세범위

한국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국적이 한국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고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개인소득세의 과세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재미동포가 1년에 한국에서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두고 183일 이상 머물면 한국 소득세법상으로 거주자로 취급되어 국내의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재미동포가 1년에 한국에서 183일 미만 머물면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한국에서 창출한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미국 세법에

의해 미국 거주자가 되고 동시에 한국 세법에 의해 한국 거주자가 됨으로써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3조에 의해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한다.

III. 부모님 등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경우

한국의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순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한국에 있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재미동포에게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는 포괄적으로 상속인(자녀, 배우자 등)에게 승계된다. 재미동포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비례해서 상속세를 상속개시일(사망일)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은 없지만 채무를 인수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보다는 채무를 더 많이 상속받게 되어 상속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 이럴 때는 한국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상속재산에서 10억원을 공제(deduction)해 주며, 부모님 중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현재 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있을 경우 부모님의 순재산이 10억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상속세 부담은 없다.

이 때, 재미동포가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을 처분하면 한국에서 상속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해당 양도소득은 미국 국세청에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처분대금을 미국으로 송금 받고자 할 때에는 제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거래 외국환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 소재하는 재산이 동산이나 주식(단, 골프장 같이 회사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과세됨)인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6조(양도소득)에 의해 양도자의 거주지국인 미국에서만 과세되고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혹시 부모님의 부동산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를 경우에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신청인은 상속인이 직접 시청이나 구청 등에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은행예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민원센터(<http://www.kacpa.or.kr>)

www.fcsc.kr/main.jsp) 민원신청 콘텐츠에 접속한 후 상속조희안내를 이용하면 된다.

IV. 한국에 있는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한국 세법은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재미동포(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한국입장에서 보면 비거주자에 해당됨)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증여할 경우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한국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되며, 재미동포 자녀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현금 등을 증여할 경우에는 10년 간 최대 3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deduction)를 한 후 부모님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5백만원, 한국에 있는 직계비속(자녀)에 증여할 경우에는 5천만원(만 19세 미만이면 2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 한국 거주자가 증여세를 부담한다. 그러나 미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만약,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할 경우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직접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직접 증여하기 보다는 먼저 부모님이 해당 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증여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미국의 자녀가 한국 소재 주택을 처분하면 무조건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 있는 친인척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금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고 직접 송금될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국내의 친인척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동 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금전대차계약을 신고하면 해당 거래는 증여세 대상은 되지 않으나 금전대차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다.

V. 맺음말

재미동포가 비거주자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재미동포가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될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요건이 충족될 경우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금을 성실히 신고 납부할 필요가 있다.

www.unitibank.com

용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Paul Lee
SVP & Regional Manager
Orange county Regional
714. 736. 5822

Diane Park
SVP/Relationship Manager | Los Angeles Office
213. 401. 3250



Michael Kang
EVP & CLO
Los Angeles Office
213. 365. 7107



Joon S. Huh
FVP & Branch Manager | Garden Grove Office
714. 735. 3698



Christina Ahn
FVP & SBA Loan Manager
213. 401. 3205



Stella Min
FVP & Branch Manager
Buena Park Office
714. 736. 5715

뛰어난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최상의 금융 노하우와 서비스,
유니티은행이 함께 합니다.

unitibank
유니티은행

본점/ 부에나파크 지점

6301 Beach Blvd. #100
Buena Park, CA 90621
714. 736. 5700

LA 지점

3327 Wilshire Blvd. #A
Los Angeles, CA 90010
213. 365. 7100

가든그로브 지점

9252 Garden Grove Blvd. #27
Garden Grove, CA 92844
714. 590. 8500

SBA 대출부

3327 Wilshire Blvd. #A
Los Angeles, CA 90010
213. 401. 3205
sbaloan@unitibank.com

국제부

6301 Beach Blvd. #100
Buena Park, CA 90621
714. 736. 5828


최운화 Uniti Bank 회장

키머니 관행의 변화를 바라보며

키머니는 임대료의 일부다. 우리 한인사회의 주요 산업 지역인 L.A.다운타운 의류상가의 오랜 관행인 키머니는 임대를 할 때 별도로 지불하는 묵돈을 말한다. 이를 두고 건물주의 지나친 요구라는 비난은 끊이지 않아 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키머니는 전체 임대계약의 일부다. 입주자 입장에서 보면 키머니를 포함한 임대료를 계산해서 그 장소가 매력적이면 임대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키머니를 가지고 건물주를 도덕적으로 비판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건물주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키머니를 뺏아갔다며 몰라도, 적어도 의류상가의 키머니는 자유의사에 따라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키머니를 비난하는 것은 임대료가 비싸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요즘 들어 키머니가 사라지는 풍조가 생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 키머니의 도덕적 문제가 사회화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장사가 예전같지 않아 입주자가 줄어들자 임대료를 싸게해서 임대를 하려는 경제현상일 뿐이다.

키머니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점은 세금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키머니는 많은 경우 현찰로 거래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받는 건물주는 수입 보고에서 빼고, 주는 입주자도 비용처리를 할 수가 없다. 지하경제라는 얘기다. (키머니를 받아서 제대로 수입보고를 하고 입주자에게 영수증도 끊어주면서 세금을 낸 건물주는 제외하고서다.)

따라서 키머니의 문제는 키머니를 요구하는 건물주의 부도덕이 아니라, 건물주와 입주자간의 세금회피를 서로 도와주면서 지하경제의 혜택을 추구하는데 있다. 건물주는 수입을 보고하지 않아서 세금회피의 의도가 쉽게 이해가 되지만, 입주자는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세금회피와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다.

입주자가 키머니를 현찰로 주려고 하면 어디선가 현찰을 만들어야 한다. 제대로 은행에 입금한 돈을 현찰로 찾아서 주게되면 여러가지로 불편하다. 자칫 세금당국

의 관찰대상이 될 수도 있고, 입금을 한 돈이니 자신은 수입으로 보고해서 세금대상이 되는데, 지급한 키머니는 비용처리가 안되니 실제 부담이 더 크다. 그러다 보면 종종 키머니를 만들기 위해 현금으로 받은 돈을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은 채 모으게 되는데, 이는 결국 국 입주자 입장에서 수입축소라는 세금회피가 된다. 한편 만약 키머니가 없다면 건물주는 임대료를 그만큼 올리게 되는데 이 때는 양성화된 돈이어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면 건물주는 세금별 부분만큼 더 임대료를 올리게 된다. 따라서 입주자도 키머니를 현찰로 내게 되면 그만큼 혜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키머니 제도는 건물주와 임대인 양자 모두의 혜택이 된다.

결론적으로 키머니는 건물주의 횡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비난이다. 건물주의 세금줄이기 위한 의도를 임대인이 도와주면서 서로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자유시장경제에서 서로의 혜택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키머니는 서로에게 필요한 결과물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 이러한 세금과 관련한 편의주의식 타협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영세업자들 입장에서 제대로 세금내고 사업하면 먹고살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서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관습이 계속되면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이상하게 되고 심지어 생계형 세금회피가 아니라 아예 돈벌기용 세금회피까지 정당화되는 비정상적 사회가 되는 위험이 있다.

우리 한인사회가 이제는 상당히 큰 경제규모로 성장했고, 미국내 몇십대 부호에까지 가는 자랑스러운 한인도 나오는 단계에까지 올라갔다. 이럴 때 우리사회가 세금이라는 국민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집단으로 인식되면 우리사회의 정직력이 커지기 어렵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좋지 않은 낙인을 남겨주게 된다. 실제로 2014년에 겪었던 의류상가에 대한 대대적 조사가 한인사회의 이미지를 떨어뜨린 것은 관행화한 세금

회피 목적의 현찰거래가 원인이었다고 유추된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더구나 요즘 계속되는 미국 국세청과 국토안보부의 금융범죄조사국 등의 은행비밀법이나 돈세탁방지법의 강화는 테러지원자금이나 미약자금의 근절에도 목적이 있지만, 탈세추적도 중요한 목표다. 그리고 탈세는 벌과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도 간혹 형사사건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의 위상강화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당당한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사회적 목표와 미국정부의 돈세탁방지에 관한 준법이라는 두 가지 이유를 위해 스스로 투명한 거래를 권장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감지하고 스스로 변하고 있다. 경제적 이유건 단속이 무서워서건 우리 사회의 세금문화는 발전하고 있다. 아주 긍정적인 변화다. 이 변화는 계속돼야 한다. 이 변화는 한 두사람이 만들 수 없다.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그 중에서 특히 세금의 최접점에 있는 공인회계사의 역할은 막중하다.

대부분의 공인회계사 분들이 고객에게 제대로 된 세금보고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고 있다. 가끔씩 세금을 비공식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을 요구하는 고객을 설득하다 돌려 보겠다는 경우도 종종 듣는다. 당장 고객 한 분을 잃는 것은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겐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란 직업에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그만큼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탁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좀 더 투명한 경제활동을 위해 고객을 설득하는 의무가 있다고 본다.

키머니 관행이 사라지는 지금이 현금거래를 통한 세금회피의 관행 전체가 사라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여기에 공인회계사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처럼 더욱 투명화되는 우리 사회의 최첨명의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Gary Son, 공인회계사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세 보고

지난 5월 미 상무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1분기의 온라인 상거래 매출이 80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5%가 증가한 것이고, 2014년도 4분기와 비교할 때 3.5%가 늘어난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4분기 미국 최대의 쇼핑철인 추수감사절 시즌 동안 사이버 먼데이의 온라인 매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블랙 프라이데이 대비 30.5%가 높았다는 발표를 상기한다면, 아마존을 위시한 온라인 상거래 시장이 얼마나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겠다. 또한 최근 경기불황과 취업난을 돌파하고자, 아이디어와 디자인, 소규모 자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온라인 상거래시장의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따라서 앞으로 온라인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자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판매세 보고를 둘러싼 최근의 이슈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온라인 상거래를 하거나 캘리포니아에 사업장이 있지 않더라도 캘리포니아 거주 고객들에게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지난 2012년 9월 15일에 발표된 캘리포니아 인터넷 판매세 규정(AB28과 AB155)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몇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온라인 구매 고객들에게 판매세를 부과하고, 징수된 판매세를 조세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에 보고, 납부해야 한다.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한다"는 개념을 종전보다 확대 해석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창고나 샘플 룸, 임시 사무실 등이 캘리포니아에 소개하고 있거나, 본인을 대신한 대리인이나 판매에 대한 서비스 용역 회사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경우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서버 등 각종 기계나 장치들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에 계약에 의한 계열사 관계(Affiliate Nexus)가 있는 경우 등등에 해당하는 온라인 상거래 업체는 SBOE로부터 seller's permit을 받아 판

매세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Affiliate Nexus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다음의 5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캘리포니아에 계열사 관계, 즉 Affiliate Nexus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첫째로, 캘리포니아의 잠재고객에 대한 정보를 직간접으로 소개받는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두번째, 캘리포니아 내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계열사 관계의 회사나 개인에게 커미션을 지급하는 합의나 계약이 있는 경우가 되겠다. 세번째, 위의 계열사 협정 계약에 의해 연간 1만달러 이상의 매출이 있으며, 계열사를 통한 매출을 포함한 해당 온라인 업체의 전체 캘리포니아에서의 연간 매출이 1백만불을 넘는 경우이다. 네번째 조건은 해당 계열사가 블로그나 전화, 뉴스레터 등으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잠재 고객들에게 판촉을 하고 있는 경우이고 마지막 다섯번째 조건은 이런 행위들이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타주의 온라인 업체를 위해 실행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되었다. 예를 들어, 워싱턴 주의 온라인 쇼핑몰 ABC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웹 마케팅회사 CD에게서 캘리포니아 고객들의 정보를 받고, 매출에 대해 커미션을 주는 계약을 맺은 경우, 마케팅 회사 CD가 쇼핑몰 ABC를 위해 인터넷과 블로그를 통해 제품과 할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CD 회사를 통한 매출이 연간 2만불에 달하고 ABC 쇼핑몰의 캘리포니아에서의 연간 매출이 1백 2십만불인 경우, ABC 회사는 캘리포니아에 Affiliate Nexus가 있는 것으로 보아, 캘리포니아 SBOE에 seller's permit을 내고 sales tax를 보고, 납부해야 하겠다.

여기에 한가지 더 추가하여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지난 3월 10일 미 의회에 재상정된 미 전역에 대한 온라인 상거래와 판매세 부과에 대한 법안이다. 법안의 정식명칭은 "Marketplace Fairness Act of 2015(이하 MFA 2015)"로, 현재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내 전 지역의 거주자에게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 고객에게 판매세를 부과해야 하며, 해당 주정부에 판매세를 보고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즉, 타주(out-of

state)에 대한 연간 총 매출이 백만불을 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워싱턴 DC를 비롯해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 45개 주정부에 판매세를 보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상거래 사업자는 적어도 미국 내 46개의 서로 다른 판매세 규정을 이해하고 보고 시스템을 배우고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고 봐야 할 것이다.

MFA 2015는 지난 2013년에 처음으로 의회에 상정된 이후 올해 3월에 재상정된 법안으로, 온라인 상거래가 오프라인 상거래 매출 증가세를 뛰어 넘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보면, 온라인 매출에 대한 판매세 징수 문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 2012년에 발표된 캘리포니아 인터넷 판매세 규정도 이번에 상정된 MFA 2015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보았을 때, 법안이 현실화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겠다.

이번에 상정된 MFA 2015가 명칭처럼 "공정한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본인 역시 아마존과 같은 소수의 대규모 사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인터넷 상거래 업체들의 경우는 타주(out-of state)에 대한 연간 매출이 월령 백만불을 넘는다고 하여도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들이기에 미국 전체 45개주 각각의 판매세 규정과 보고 절차를 이해하고 준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이 문제를 관련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다고 하여도 이 소프트웨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능 해결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때 업데이트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는데,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 역시 인터넷 상거래 사업자에게 부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MFA 2015가 미 의회를 통과하여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될 지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우리 앞에 현실이 될 상황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겠다. 변화하는 세법과 관련 법규에 대해 어느 때 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와의 상담과 조언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차비호, 공인회계사

부동산 임대수익과 세금계산

부동산 소유시 기대할수 있는 수익은 임대수입과 가격상승 두가지이다.

임대수입은 매년 세금정산을 해야하며 시가상승에 관한 세금보고는 부동산을 판매한 해에 하게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할때는 일정금액을 투자 (다운페이) 하고 나머지는 은행융자를 하게 되는데 아래 예로든 세가지 계산방법을 알면 부동산투자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예: 일년 전체 임대수입이 \$76,000 발생하는 4유닛 아파트를 \$1,000,000에 구입하고 \$300,000 를 다운페이하고 \$700,000 은행융자를 30년 고정 5% 이자에 빌렸을 경우

NOI vs. Cash Flow vs. Taxable Income

| | 1. NOI | 2. Cash Flow Income | 3. Taxable Income |
|-------------------|-----------|---------------------|-------------------|
| Rental Income: | \$ 76,000 | \$ 76,000 | \$ 76,000 |
| Expenses: | | | |
| Property Tax | 12,000 | 12,000 | 12,000 |
| Utilities | 5,000 | 5,000 | 5,000 |
| Insurance | 1,500 | 1,500 | 1,500 |
| Repair & Supplies | 3,500 | 3,500 | 3,500 |
| Management Fee | 4,000 | 4,000 | 4,000 |
| Total Expenses | 26,000 | 26,000 | 26,000 |
| NOI (임대순수익) | 50,000 | 50,000 | 50,000 |
| Loan Payments | N/A | 45,096 | 34,765 |
| Depreciation | N/A | N/A | 22,000 |
| Net Income | 50,000 | 4,904 | (6,765) |

1. NOI (Net Operating Income/임대순수익)

NOI 는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전체 임대수입에서 소유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임대순수익을 말한다.

임대수입에서 부동산 소유, 운영시 발생하는 재산세, 수리비용, 보험, 유틸리티 등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기억해야 할점은 NOI 계산에는 은행 융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위에 도표에서 볼수 있듯이 전체 임대수입 \$76,000에서 은행융자 상환을 제외한 전체비용 \$26,000 을 빼면 \$50,000 순수익 (NOI) 이 발생한다. NOI 는 건물의 수익율과 현시가를 측정하는 중요한 수치이며 은행융자 없이

NOI 를 계산하는 이유는 투자자마다 은행융자 금액과 이자율이 다를수 있기 때문이다.

2. Cash Flow Income (은행융자를 갚고난 후의 수입)

임대순수익에서 은행융자를 갚고 난 후에 손에 남는 수익을 Cash Flow Income 이라고 하는데 소유주에게는 실제로 손에 남는 현금수입이다. 처음 부동산 구입시 은행융자가 너무 많거나 이자가 비싼경우 Cash Flow Income 이 적거나 마이너스 인 경우가 생길수 있으므로 너무 무리 하게(Leverage) 은행융자를 많이 하는것은 조심해야한다.

3. Taxable Income (세금상 수입)

세금계산을 할때는 은행융자 지불금액 중 이자만 공제할수 있고 원금상환부분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물이 헛수가 지만면서 남아져 가치가 하락했다는 가정하에 세법상 감가상각 (Depreciation) 을 경비로 처리할수 있다. 감가상각은 건물가격에서 땅을 뺀 건물의 가격을 아파트인 경우 29.5 년에 나눈, 즉 매년 약 3.3% 를 경비로 처리할수 있다. 그럼으로 위에 도표에 나온 경우처럼 Cash Flow Income 은 \$4,904 이지만 세금보고는 \$6,765 손해로 보고되어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이다.

CAP Rate와 부동산 가격

| | Net Operating Income | CAP Rate | Property Value |
|---|----------------------|----------|----------------|
| 1 | \$ 50,000 | 4% | \$ 1,250,000 |
| 2 | 50,000 | 5% | 1,000,000 |
| 3 | 50,000 | 6% | 833,000 |
| 4 | 50,000 | 7% | 714,300 |
| 5 | 50,000 | 8% | 625,000 |

투자용부동산의 가격을 측정할 때 해당 부동산의 수익율을 나타내는 CAP rate 를 적용한다. CAP(italization) rate 은 은행융자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순수익 (NOI) 를 가격으로 나눈 수치다.

즉, 부동산을 현금으로 투자했을때 발생하는 순수익이 투자액의 몇 퍼센트인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위에 예로든 4유닛 경우\$50,000 의 NOI 가, CAP rate 5%, 발생하지만 경기와 위치에 따라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실제로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같이 부동산 경기가 좋을때는 CAP 이 3%~4%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되고있다. 그러나 같은 건물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09년에는 가격이 절반 수준이었던 CAP 7%~8% 정도에 거래가 되었다.



김장식, 공인회계사

가업승계 성공의 마지막 관문

지난해 10월, 서울을 방문했을 때 부분 개장한 제2롯데월드몰을 구경한 적이 있었다. 내외부가 온통 황금색으로 번쩍이고 한국 최고층 기록을 향해 위풍당당 치솟아 가고 있었다. 2층시계 명품관에는 세계 명품시계는 다 모아 놓았는 듯 들도 보도 못한 브랜드가 즐비했다. 그런 롯데그룹에서 최근 창업주 아버지와 두 아들사이의 대물림 진흙탕 싸움을 보느라 '가업승계'에 대하여 새삼 관심을 갖게 된다.

'가업승계'란 가족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 유지되도록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차세대 경영자 (자식, 친족등)에게 물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자칫하면 부모 자식지간, 형제사이에 골육상쟁의 싸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싸움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기억할만한 사례를 몇가지 소개한다.

명품 '구찌' 가문의 비극

구찌의 창시자 구찌오는 온갖 고생 끝에 모은 돈으로 고향 피렌체에서 가죽 장사를 시작했다가 크게 성공했다. 그는 여러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가족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던 중 브랜드 소유권을 두고 친형제들끼리 싸우게 되었다. 결국 조카 마우리치오가 사장을 하다가 경영부진으로 중동의 투자회사로 넘어갔다.

이로써 구찌에는 창업자 일가가 한명도 남지 못하게 되었는데 사장의 아내는 자신과 의논없이 회사를 통째로 넘긴 남편을 증오했다. 전문 킬러를 고용해 남편을 살해했던 것이다.

'포브스'의 가업승계

Forbes잡지사 창설자 Malcolm Forbes는 1990년 사망할 때 지분 51%를 장남

에게 몰아 넘기고 나머지 지분은 다른 네 자녀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평소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승계대상에 대하여 기탄없이 논의했고 자녀들도 의견을 일치했다.

아버지 Forbes는 그의 지분을 모든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면 결국 내분이 날 것이고 회사는 방향 감각을 잃을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다.

500년 역사의 Beretta 가족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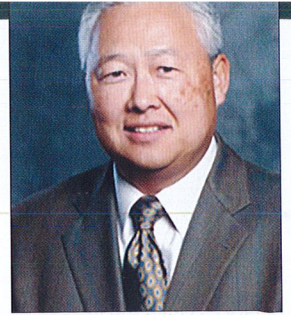
각종 총을 제조 생산하는 이태리 기업 Beretta회사는 16세기초, 1529년에 창립되어 500년동안 15대를 대물림한 가족기업이다. 가족멤버가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전근대적 기업이지만 가업승계에 표본이 될만한 기업이다.

존경받는 기업 유한양행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은 유한양행이라한다. 창업자 고 유일환 박사는 사후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증하면서 후손가운데 누구도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까지도 전문경영인 체제로 유지하고 있다. 소유와 경영의 철저한 분리로 전문 경영인이 모든 걸 결정하고 주인들은 경영에 간섭하지 않고있다.

이민 1세들의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이하면서 웬만한 중산층 가정에도 집 한채 정도는 물려줄 여력이 있다고 본다. 롯데와 같은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성공의 마지막 관문인 가업승계가 아름다운 바통터치가 되어 중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을 짜야할 것이다.





Steven Kang, 공인회계사

US Worldwide Income Tax and Estate Tax for Nonresidents



With the affluence of Korea and with equal prosperity of Korean Americans, there have been a lot of cross ownership of properties between USA and Korea. In any international investment, the end game of such investment must be properly planned to ensure maximum cash out. The two biggest expenditure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re income and gift/estate taxes.

Worldwide Income Tax System

USA is one of the seven countries in the world, which imposes worldwide basis of income taxation (Korea is one of the seven countries). A Global Perspective on Territorial Taxation, Tax Foundation, August 10, 2012.

Under the worldwide basis of income taxation, all income is subject to tax, including income earned abroad. As such, US taxpayers pay US tax on

foreign income, as if it was earned in the US. Koreans, who are either US citizens or treated as US residents in accordance to US tax law, must report worldwide income to Internal Revenue Service.

United States Treasury department requires US taxpayers to report foreign bank account (FBAR) on Form 114, and Form 8938 under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There is no tax associated with submitting of these two forms. However, there are severe penalties if US taxpayers fail to report foreign financial accounts (FFA). The penalty could be up to half of FFA.

So if there is no cost to filing FBAR and FATCA, what are the big fusses about not reporting FFA? Like any law, FBAR and FATCA are meant to keep honest taxpayers honest. If a US taxpayer reports his/her FFA, then he/she will be more likely to report worldwide income. For this reason, if a US taxpayer admits to past mistakes (not reporting worldwide income) and take steps to correct these mistakes, penalties are either reduced or waived. These corrective actions are also called amnesty programs.

Based on my discussion with a Korean tax attorney, who has been assisting Korea National Tax Services (국세청) on FATCA, the IRS already has the information on US taxpayers with Korean financial accounts. As such, it appears it is only a matter of time for the IRS to go after the US taxpayers, with Korean financial accounts, who have failed to come forward through amnesty programs.

In 2014, United States Treasury Department started its third amnesty program, called Stream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SFCP). Those, with Korean FFAs, should seriously consider SFCP, if previous failure to file FBAR was non-willful. To be considered non-willful, you should not have been previously contacted by the IRS on failure to file FBARs. In addition, you need to report worldwide income for the past three years.

So what is considered to be worldwide income for US tax purposes? According to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61, "gross income means 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derived". Therefore, everything is taxable worldwide income, unless it is specifically excluded by the Internal Revenue Code.

Through the use of foreign tax credit mechanism, income taxes paid in Korea could be offset against US income taxes, which means worldwide

income reporting may result in no or very little additional US income taxes. Even if you have no US income taxes to be paid, there still may be a requirement for you to file US income tax return, to declare that you are eligible to take the benefit of exclusions and foreign tax credit. You should discuss with your tax advisor to ensure that you claiming all of the benefits of exclusion and foreign tax credit. For California income tax purposes, there could be double taxation as California does not have foreign income tax credit mechanism. However, the paid Korean income taxes could be deducted in computing California taxable income.

US Gift/Estate Tax

Most US citizens or resident aliens don't worry about gift/estate tax, as they have up to \$5.43 million (\$10.86 million for married couple) in 2015 to gift or leave behind assets during their lifetime via estate tax. However, non US citizens, such as Korean citizens (except for dual status citizens), only have up to \$60,000 to give away US real property in their life time, which means all amounts given above this figure are subject to gift/estate tax rate of 35% to 40% on taxable estate.

I always tell my Korean citizen friends, residing in the US, with worldwide

assets over \$60,000, that they should become US citizens as soon as possible. Future is unknown

If a US taxpayer is married to Korean citizen spouse and upon the death of the US taxpayer, the Korean citizen spouse will have to pay 35% to 40% estate tax. To avoid paying estate tax, Korean national spouse normally will need to set up Qualified Domestic Order Trust (QDOT) and obtain US citizenship, prior to changing title of their jointly held asset to his/her name. For US person, the value of a property is net of outstanding liabilities or mortgages. However for Korean citizens, the outstanding liabilities or mortgages on US property could only be netted, if the worldwide assets are disclosed. As many Korean citizens do not want to disclose their worldwide assets to the US government, the outstanding liabilities or mortgages on US properties cannot be netted, resulting in higher estate taxation, which is unfortunate.

There are ways in which Korean citizen could avoid US gift/estate tax. You should consult with CPAs or attorneys, who specialize in this area. As gift/estate taxes are imposed upon death of one's life, as such there is no do-over if a mistake is made. For this reason, a care should be taken in properly structuring buying US properties by Korean citizens.

**BBCN Bank is proud to support
the 2016 KACPA Journal.**

**Forbes | 2015
BEST BANKS
IN AMERICA**

©2014 Forbes Media LLC. Used with permission.

**Named among Forbes' Best Banks
in America in 2013, 2014 and 2015**

We invest in your potential

Strength in Partnership

 **BBCN Bank®**

Member  EQUAL HOUSING  LENDER BBCN is a SBA Preferred Lender.

BBCNbank.com



정동완, 공인회계사

Built in Gain Tax를 고려한 주식회사 자산 매각계획



John Kim씨는 대규모의 매뉴팩처링 회사를 20년 전 부터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이도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Business를 매각하고 조용히 아내와 여행이나 다니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매각에 따른 세금문제에 대해 논의의 의뢰해 왔다. 그의 Business는 안정케도에 있어 경쟁업체들은 구매에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보내고 있다. 그의 Business는 업체 특성상 많은 Machine들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회사 소유로 2001년에 구입하였다. John Kim씨는 이 회사의 100%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원래 형태는 C-Corporation이었지만, 4년전 C-Corporation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 이로인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능가함에 따라 CPA와 논의 후 S-Corporation 로 전환 하였다. John Kim 씨의 Business매각에 따른 세금 Projection을 하던 중, Built-In Gain Tax Issue (이하 BIG)가 적용됨을 언급하였다.

C-Corporation 소유주들은 기업의 자산매각 이윤에 대해 주식회사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Shareholder level에서 또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에, S-Corporation의 경우, 기업차원의 세금은 따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 S-Corporation의 자산매각은 주주차원에서, 주식판매할 때 처럼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Built In Gain Tax (참조 Foot note 1)는 C-Corporation 소유주가 자산매각 이윤에 대한 Corporation level 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산 매각 전 S-Corporation으로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라고 하겠다.

C-Corporation이 S-Corporation으로 전환이 결정될 때, 전환이 결정된 날에 자산의 시가(Fair Market Value)에서 회사 조정가치(adjusted basis)를 뺀 Built in Gain 을 결정해야 한다.

만약 자산의 회사 조정가치가 시가보다 더 클경우는 Built in Gain은 없는 것이 되고, 만약 시가가 회사조정가치를 넘어설 경우 Built in Gain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들어, 시가 \$500,000 의 자산의 조정가치가 \$300,000 이라면, \$200,000 의 미실현 소득(Built in Gain) 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만약, 전환된 S-Corporation이 C-Corporation에서 넘어온 자산 중 일부를 매각할 경우 이 Built in Gain 미실현소득은 실현가능한 소득이 되고, C-Corporation에서 처럼 회사차원에서 세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S-Corporation의

실현가능 BIG 이 있을 경우 그 세율은 현재 35% 로, Gain특성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C-Corporation 최고세율)

다만, S-Corporation의 BIG Tax Payment는 S-Corporation의 Taxable Income 한도내로 제한될 것이다. 그해 초과된 BIG TAX는 그 다음해로 이월되어 적용될 것이다.(참조Foot Note 2) 만약 그 미지급금액이 계속 이월되어, 인식기간이 모두 지났을 경우 그 나머지 Gain에 대한 BIG Tax는 소멸되어 버릴 것이다. Built in Loss의 경우를 살펴보면, 만약 자산의 회사 조정가치가 시가보다 더 클 경우는 Built in Gain 은 없는 것이 되고, Loss가 적용된다.

실현가능한 Loss 는 인식기간 내에 C-Corporation으로 부터 넘어온 자산을 판매해야 하고, Loss 는 S-Corporation으로의 전환을 결정할날의 조정가치에서 시가(Fair Market Value)를 뺀 금액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요약하자면, Built in gain 은 IRS Code Section 1374에 의해 법령화 되어 있으며, S-corporation 은 C-Corporation에서 S-Corporation 으로 전환한 날로부터 10년내 C-Corporation에서 이전된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 Built In Gain Tax가 적용된다.

IRC Section 1374는 1986년 처음 법령화 된 후, 2009년과 2010년에, 원래 10년의 Built In Gain 인식 기간이 있었던 것을 7년으로 줄였고, 2011-2014년에는 임시적으로 5년이 적용되었다.(참조Foot Note 3) 현재 5년영구법안(Permanent S Corporation Built in Gains Recognition Period Act of 2015)이 국회에 상정·계류 되어있고,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한다. 하지만 11월 1일 2015년 현재는 미정으로, 2015년 말까지 법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1월 1일 2015년부터는 인식기간이 10년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만약 S-Corporation이 인식기간 후까지 이 자산들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 Gain 에 대해서는 더이상 S-Corporation에 BUILT IN GAIN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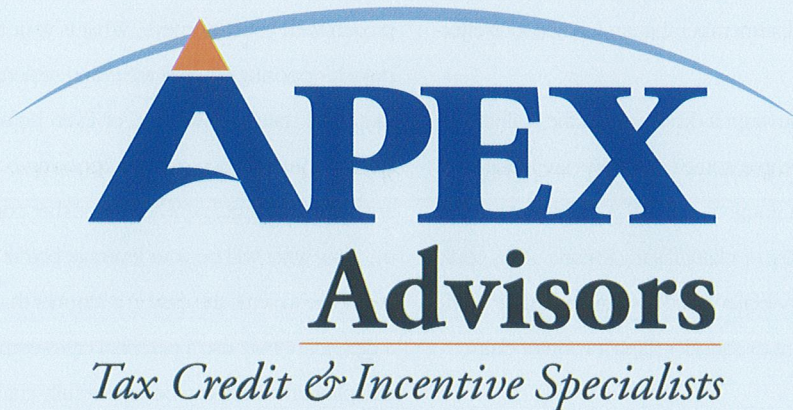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C-Corporation으로부터 이전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S-Corporation을 매각할 경우나, 이러한 자산을 보유하게된 개인이나 Trust, Estate는 자산 매각전 꼭 전문가들과 긴밀한 상의 후 절세의 지점을 정확히 결정하고, 판매에 나서야 한다.

Foot Note:

- 1) IRS Code Section 1374
- 2) IRS Code Section 1374(d)(2)(B)
- 3) Section 1374(d)(7) Recognition Period

APEX Advisors Services

- ▶ **Federal & State Research & Development (R&D) Tax Credit**
- ▶ **Federal New Markets Tax Credit (NMTC)**
- ▶ **Federal Empowerment Zone Tax Credit**
- ▶ **Federal Work Opportunity Tax Credit (WOTC)**
- ▶ **Federal Tip Credit**
- ▶ **Other Tax Credit Services**



Tel (213) 487-3333
346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50 professionals served 9,000 cases, over 60 different industries in Federal & State R&D Tax Credit and CA Enterprise Zone Tax Credit.”

“Over 15 years, we have helped more than 500 CPA FIRMS find valuable tax credits for their clients.”



방일영, 변호사 (James Bang)
Partner, Lee, Hong, Degerman, Kang & Waimey

Before your client decides to litigate, consider these factors

This article is written in response to growing concern about the increasing business related lawsuits and burden of prosecuting or defending lawsuits, especially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area. If you decide to litigate, plaintiffs and defendants should consider and following certain points.

(i) Due Diligence

When you find out that an individual or company violates your rights, whether copyright, trademark, or patent, you need to conduct a background check on the individual or company, unless you know for sure that this potential defendant is well known to you in that the individual or company is doing well and will continue to do well. Recall for a moment now that you learned from news reports about Chrysler Motor Company's bankruptcy, the Enron fiasco, Kodak's failure, and many of the best of the best companies going bankrupt. If the financial standing of those stalwarts of business has been in question, don't take any company for granted. To put it simply, you need to know before you sue anyone or company whether they are able to pay the judgment once you obtain it. If not, there is no advantage to "throwing good money after bad." On the other hand, remember that an injunction is effective even against a broke defendant.

Conversely, if you are a defendant, you want to know about the plaintiff, especially their litigation history. For example, some companies are in the habit of suing others and quickly settle for a nominal sum if the defendant is ready and willing to acknowledge the validity of plaintiff's trademark. This could be an indication that they do not really believe in the strength of their mark, and that you, as a defendant, may want to consider filing a counter claim.

(ii) Pre-Litigation Stage

The owner of a copyright, trademark, or patent has a number of options before actually initiating a lawsuit against a party committing infringement. First, you should find a team of good and competent intellectual property lawyers. You will want to discuss with them your litigation objectives, priorities, cost restraints, time constraints, and overall business goals. In addition, since copyright, trademark, and patent law are specialized and complex areas of the law with many nuances, and where the cases are very fact-intensive, you will want to hire attorneys who have prior experience. It is especially

important for international clients, such as Korean companies doing business in the U.S., to be able to find attorneys who understand the cultural differences. For example, the thought process of Korean business people and the way companies in Asia conduct their businesses are different from the way people think and do business in the U.S. It is too time-consuming to have to explain every difference to your lawyer if he/she does not readily understand your thought process and the way you conduct your business. At times, it may even be almost impossible to explain differences because certain things can get lost in translation. The bottom line is you will want attorneys who can understand you so that they will be able to better serve your needs.

Your attorneys can send various types of letters to the party committing infringement on your behalf (e.g., cease and desist letters). This puts the infringing party on notice of a potential suit. Depending on the response, or lack of response you receive, you can discuss strategy with your attorneys on what the next step should be.

You should consider an early settlement discussion,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conducting mediation since litigation is costly. Plan your settlement approach with your attorneys. What is your timetable? When will you first approach opposing counsel regarding settlement? Do you want to settle before the initial status conference, or even before filing the complaint? Consider having your attorney call the opposing counsel and tell them that you are amendable to settlement so that neither party needs to waste time and money. Also, what will be your leverage point? Your leverage is what you are going to use to settle the case in a manner that is favorable to you. For example, a defendant may use a potential cross-complaint as leverage if he/she thinks that plaintiff's mark can be successfully challenged and cancelled, or even the fact that the defendant is judgment proof may be leverage.

Your attorney should advise you on the potential costs and benefits of litigation. At the end of the day, you probably do not want a victory that was not worth winning because it cost too much to prevail. This is sometimes referred to as a pyrrhic victory. You may want to ask your attorney to prepare a litigation budget to help you run a cost-benefit analysis and decide on how to best proceed. You also want to candidly discuss with your lawyer about the merits of your case. Your attorney should examine/evaluate the case and explain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a party's claim, documentary evi-

dence and particular witnesses' testimony as much as possible at the inception rather than waiting after the complaint is filed. In order for a lawyer to do this, he/she must be knowledgeable, experienced, and honest, putting the interest of the client before that of his,

The following are some of the things you need to consider. There are two types of jurisdiction that must be considered: subject matter jurisdiction, and personal jurisdiction. Subject matter jurisdiction deals with the power of the courts to hear a certain type of case. Unlike state courts, federal courts are courts of limited jurisdiction. Federal courts can only hear cases that fall within their jurisdiction under Article III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or hear cases that Congress has given power to the federal courts to hear.

By contrast, personal jurisdiction mainly deals with due process issues that may arise for the defendants in a particular forum. Personal jurisdiction can be established in one of two ways: general jurisdiction, or specific jurisdiction. General jurisdiction exists if the defendant has substantial contact with the forum state that is systematic and continuous. The result is that the defendant can be sued within the forum state for things that took place outside of the forum state and that were unrelated to the contacts with the state. Specific jurisdiction exists for a specific claim as long as the facts giving rise

to the claim originated in the state.

Jurisdiction is important because a complaint can be challenged and thrown out on the basis of a lack of either type of jurisdiction. In fact, one of the first things a defendant will try to do is to attack your complaint on the basis of jurisdiction or other defects of your complaint. The practical effect of this is that you need a good attorney who will carefully consider the proper court in which to file a lawsuit on your behalf.

There are other strategic preliminary considerations: venue; whether to file in Federal or state court; whether to obtain injunctive relief; jury trial v. bench trial, etc.

Again, it is important to find a competent team of lawyers who can discuss the relevant points mentioned above and move swiftly at your request.

James I. Bang is a partner at Lee, Hong, Degerman, Kang & Waimey. He is an experienced litigator in the areas of commercial, employment, real estate, trademark, copyright and construction disputes. He has represented entities in air transportation, apparel, banking, entertainment, finance and investment, food processing and distribution, information technology, media, telecommunications, as well as foreign government agencies and high profile individuals



월수수료 없이, 무료 Bill Pay
서비스 기능까지 있는

태평양 은행 EZ Student 체킹



계좌 오픈시 선착순 300명께
\$10불 상당의 커피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PACIFICCITYBANK
태 평 양 은 행


Ann Lee, 공인회계사

과태료에 대한 이해

미국에서 경제 생활을 하는 개인에게 매년 소득세 보고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이 의무 수행에 있어서 세금 보고와 납세 부담에 더해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는데, 다양한 종류와 범위에 걸쳐 발생하는 과태료 중, 4월 15일을 마감일로 보고되는 개인 소득세에 관련하여 연방 국세청에 공고된 과태료 정보를 기준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과태료는 납세자의 세금 보고 의무의 준수를 주 목적으로 하여, 보고 마감일과 보고된 정보의 정확성에 따라 부과될 수 있으며, 크게 민사적 처벌과 형사적 처벌의 두 가지로 분류 됩니다. 먼저 민사 처벌의 근거가 되는 과태료를 살펴 본다면, 세금 보고와 세금 납부라는 두 가지 중요한 납세자의 의무를 마감일 이내에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와, 실질적으로 과소 보고된 세금과 거래, 환불에 대한 잘못된 주장, 근거 없이 제출된 세금보고, 또는 소셜 번호 등 보고에 필요한 정보 제출의 미비 등이 과태료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마감일에 세금 보고를 맞추지 못했을 경우, 월 과태료는 부담 할 세금의 5%로써 최대 과태료는 총 세금의 25%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의 세금을 8개월 이 지난 후 내게 된다면 늦은 보고로 인해 \$1,250의 추가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이에 더해 늦은 보고가 사기행위로 간주될 경우 월 과태료는 5%에서 15%로 올라가 최고 총 세금의 75%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늦은 보고가 마감일을 60일 이상 초과 했을 때 \$135이나 총 세금의 100% 중 낮은 금액이 최저 과태료로 책정 됩니다.

납세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적어도 보고 년도 세금의 90% 혹은 전년도 세금의 100% 중 적은 금액을 세금의 예납 또는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미리 예납해놓은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의 차액이 \$1,000 이상 생길 경우 예납 세금 미납으로 인해 과태료의 대상이 되어, 예납이 늦은 일 수와 정해진 퍼센티지에 따라 "서식 2210"을 사용하여 계산된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또한 마감일 이전에 세금 완납을 하지 못했을 경우 부담 할 세금의 0.5%가 월 과태료로 부과 되며, 이에 더해 만일 세금 징수 통지서가 발행이 되었다면, 월 과태료는 0.5%에서 1%로 올라가 최고 총 세금의 25%까지 부과 됩니다. 늦은 보고로 인한 과태료와 늦은 납부로 인한 과태료가 같은 달에 함께 추징이 될 경우 5% (또는 15%)의 늦은 보고로 인해 생긴 과태료는 늦은 납부로 인해 생긴 과태료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나 늦은 보고가 마감일을 60일 이상 초과 했을 경우 \$135이나 총 세금의 100% 중 낮은 금액이 최저 과태료로 책정 됩니다.

다음은 보고된 세금의 정확성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보고 규정을 무시하고 적절한 기록 없이 제출된

보고와 세금을 상당 부분 줄인 보고로써 그 결과로 과소 지급된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추징되며, 세금을 줄인 결과가 실 거래 없이 주장된 세금 혜택과, 해외 금융 자산의 공개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결과에 기인한다면 줄인 세금의 4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세가 줄어져 보고 되었다는 의미는 세금보고서에 기재된 세금이 올바르게 계산된 세금보다 적을 경우를 뜻하며, 그 금액의 차이는 올바르게 계산된 세금의 10%와 \$5,000을 비교 후 큰 금액을 선택 하여 그 이상의 차액이 생겼을 경우를 기준합니다. 만일 잘못된 세금 보고로 환불이나 다른 세제 혜택을 받았을 경우 허용되지 않은 금액의 20%까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또한 근거 없이 제출된 세금 보고나 실질적으로 틀린 세금 보고를 한 경우 \$ 5,000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세금포탈,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보고, 정보제공, 또는 납세, 사기와 거짓 진술, 사기성 있는 보고서 준비, 또는 신분 도용 등이 해당 대상이 되며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등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여러 종류와 형태의 과태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고 마감일의 준수와 함께 보고의 기준이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감일까지 세금을 완납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할 때 자칫 보고 마감일 자체를 넘기고 마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보고와 납세의 두 가지 의무를 이행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두 가지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보고 연장 신청을 해 놓았다면, 완납의 마감일만 지키지 못한 결과에 따른 한가지의 과태료 대상만 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밀린 세금, 예납 세금 등의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또는 해당 되는 다른 경우에, 과태료가 이미 부과 되었을 경우 면제신청이 가능하며, 면제 기준은 천재지변이나 피치 못할 사정 등을 포함한 타당한 근거, 서면으로 받은 국세청의 잘못된 자문, 또는 처음으로 과태료가 추징된 납세자들에게 주어지는 행정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 면제의 자격은 이전에 세금 보고의 의무가 없었거나, 지난 3년간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 요구 되는 모든 세금보고의 의무를 지킨, 그리고 밀린 세금을 완납했거나, 납부계획을 세운 납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는 별도로 추징된 이자는 면제 되지 않으나 면제 받은 과태료 부분에 해당되는 이자는 자동적으로 감소됩니다. 이제까지 살펴 본 여러 종류의 과태료들은 세금 보고와 납부, 보고의 정확성, 사기성의 또는 근거 없는 보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각 보고 서식이나 입장에 따라 여러 다른 형태의 과태료가 또한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방지 하는 정확한 세금보고, 또한 발생한 과태료의 성공적인 면제를 위해 담당 회계사님의 조언과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Charles Lee, 공인회계사

Federal Work Opportunity Tax Credit

최근 들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당연히 어떻게 세금을 줄일수 있는냐에 관한 것 이다. 1996년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생소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세금 공제 (Tax Credits)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이 글을 보는 많은 사업주들에게 희소식이 되길 희망한다.

Work Opportunity Tax Credit ("WOTC") 란 무엇인가?

Work Opportunity Tax Credit은 1996년 연방 정부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원래의 취지는 취업이 힘든 특정 대상자들에게 좀 더 쉬운 취업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며,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에게 연방 소득세 세금 공제 혜택 (Federal Income Tax Credit) 을 주어 특정 대상자들의 취업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다. U.S. Department of Labor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도에 신청된 WOTC credit 전체 액수는 \$1 Billion 이상이라고 보고 되었다.

특정 대상자들이 누구인가?

| WOTC 충족 특정 대상자들 | Tax Credit Amount |
|---|-------------------|
| SNAP Recipient Food Stamp 지원을 받는 사람 | \$2,400 |
| Designated Community Resident 특정 지역 사회 주민 | \$2,400 |
| SSI Recipient 생활 보조금을 받는 사람 | \$2,400 |
| Vocational Rehabilitation Referral 재활 추천자 | \$2,400 |
| Ex-Felon 출소자 | \$2,400 |
| Short-Term TANF Recipient 단기 가족 지원을 받는 사람 | \$2,400 |
| Long-Term TANF Recipient 장기 가족 지원을 받는 사람 | \$9,000 |
| Veteran 재향 군인 | \$2,400 - \$9,600 |

WOTC 신청방법과 Benefit은?

신청 절차는 특정 대상자들의 고용 후 처음 출근날로부터 28일내 각 주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WOTC Coordinator 사무실로 신청 서류를 접수시켜야 한다. 접수된 서류는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위 도표에 나온 적법 자격이 확인된 직원들의 approval certification 을 신청한 사업주들에게 발행한다.

Certification 이 발행되면 사업주들은 위 도표의 세금 공제 (Tax Credit) 액수를 각 부류의 직원 별로 계산하고, 계산된 세금 공제 액수 만큼을 납부하여야 하는 연방 소득세 보고서 (Federal Income Tax Return) 에서 차감을 하는 형태로 benefit 이 진행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세금 공제 (Tax Credit) 을 받은 액수 만큼의 실제적인 세금 감면이 이루어 진다는 말이다. 만약 계산된 세금 공제 액수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 금액을 초과한다면, 차감하고 남은 세금 공제 액수는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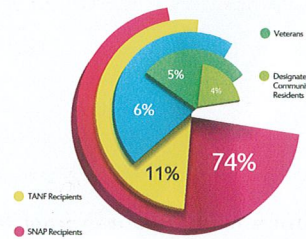
2014년 U.S.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ETA) 에서 발표된 내용 (앞 표 참조) 과 같이 미국 전체에서 약 500만명의 지원자 중에 130만명이 혜택 자격을 얻었다고 한다. 이것은 25% 신규 고용직원들이 사업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한 해에 신규 직원4명을 고용하는 사업

Total WOTC Certifications and Denials Issued National Summary for Fiscal Year 2014

| Quarter of Fiscal Year Ending on | Quarter | Total WOTC Certifications by Quarter | Total WOTC Certifications Year-to-Date | Pending Requests for Certification | Denials Issued | Total Number of Requests Received |
|----------------------------------|---------|--------------------------------------|--|------------------------------------|----------------|-----------------------------------|
| 12/31/2013 | Q1 | 433,451 | 433,451 | 1,852,464 | 432,114 | 2,718,029 |
| 3/31/2014 | Q2 | 329,999 | 763,450 | 2,076,917 | 327,894 | 2,734,810 |
| 6/31/2014 | Q3 | 307,631 | 1,071,081 | 2,413,240 | 345,874 | 3,066,745 |
| 9/31/2014 | Q4 | 233,379 | 1,304,460 | 2,785,474 | 269,366 | 3,288,219 |
| National Total | | 1,304,460 | 1,304,460 | 2,785,474 | 1,375,248 | 5,465,182 |
| Percentage of National Total | | 23.9 | 23.9 | 51 | 25.2 | |

Source : ETA Enterprise Business Support System, Fiscal Year State Quarterly Reports

1,304,460 Certifications



주는 통계상 그 중 약 1명의 WOTC 혜택을 얻을 수 있고, \$2,400부터 최대 \$9,600의 WOTC tax credit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숫자를 늘려서 만약 사업주가 100명을 채용한다면 주어진 확률로 25명이 자격을 얻게 되는데 이때 세금 공제가 최대 \$60,000이 된다.

앞 표에 나와 있듯이 발표된 충족 특정 대상자들 중 가장 많이 혜택 받았던 이들이 있는데 바로 Food Stamp 수혜자다. 무려 그 수는 130만명의 혜택자 중 7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Food Stamp 수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Food Stamp 수혜자 외에도 Food Stamp 수혜자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까지 혜택 자격이 부여 되고 있다. USDA 2014 년 보고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국의 근로자는 약 1억6천만명이 있고, 그 중 약 4천7백만명의 Food Stamp 수혜자가 있다고 한다. 이는 10명 중 2-3명이 WOTC 혜택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Too good to be true?

물론 모든 확률은 일반적인 평균이지 어느 회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분야의 사업 중에서도 많은 한인 사업체가 운영하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마켓, 공장, 케이터링 서비스, 텔레마케팅, 운송회사, 보안회사, 양로 병원, wholesale 등 저 연금 노동자가 많이 고용되는 사업 일수록 채택률이 높다. 대다수의 연방 정부와 주 세금 혜택 프로그램들이 요구하는 충족 사항과 복잡한 절차 과정 때문에 실제적인 신청이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기존 현실이다. 따라서, 경험과 전문성 있는 tax credit전문가와 상담하여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PROFECTUS FINANCIAL
ACCOMPLISH. PROGRESS



알렉스 조 Aleks Dyo



캘리 우 Kelly Woo



하워드 이 Howard Lee

PROFECTUS FINANCIAL

프로펙터스는 라틴어로 “성취하다, 발전하다” 라는 뜻으로
고객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비즈니스 플래닝: 401k | DB Pension Plan 설립 및 투자관리 | 재무 위험 관리
절세 전략 및 자산보호 계획 | 그룹 건강보험 | 사업체 보험
개인 플래닝: 투자설계 및 관리 | 은퇴 계획 | 유산상속 계획 | 자선사업 계획

**Investment Advisory Services are offered through Profectus Wealth Management Company, a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 Insurance products and services are offered and sold through individually licensed and appointed agents in all appropriate jurisdictions. Aleks Dyo CA Ins.Lic.#0D97068 Kelly Woo CA Ins.Lic.#0G37586 Howard Lee CA Ins.Lic.#0C29994

자세한 내용은 800.811.6611 또는 213.787.7292 으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웹사이트 www.ProfectusFinancial.com 을 찾아주세요.



Apple Pay™ 로
결제를 받으세요!

무료 단말기와 무료 영수증 롤 제공

*제한 사항이 적용될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US뱅크카드 서비스로 연락 바랍니다.

다양한 기능이 통합된 최신 단말기

US뱅크카드 서비스는 가장 앞서가는 카드 프로세싱 서비스 회사입니다. 최신 IP 단말기로 EMV 카드, 일반카드, 기프트카드, Apple Pay™, EBT카드 결제를 받아 보세요. 인터넷 기반의 결제로, 결제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온라인 레스토랑 솔루션



POS 시스템



모바일 페이먼트



기프트 카드/ 로열티 프로그램



페이먼트 소프트웨어



온라인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체크 게런티



금융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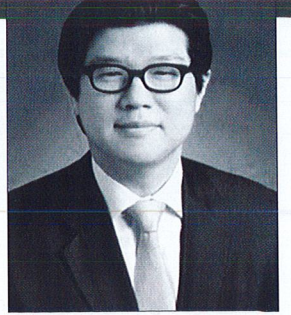
☎ 888-599-9999

US Bankcard Services® US뱅크카드 서비스

2001년부터 연속 Elavon® 탑
카드 프로세싱 상 수상



US Bankcard Services, Inc. is a registered MSP/ ISO of Elavon, Inc. Georgia and ISO of Wells Fargo Bank, N.A., Walnut Creek, CA.
© 2015 US Bankcard Services, Inc. All Rights Reserved. Ver. May. 2015-KR



조 재호, 변호사 (Jake Cho)
Partner, Lim, Ruger & Kim, LLP

공정임금과 안전직장에 관한 대통령 행정지시

올해 (2016년)부터 미 연방정부 관련 업체들은 과거 3년간의 노동법 위반행위들을 입찰과정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저희 커뮤니티의 많은 업체들이 이번 행정지시를 따라야 하는 입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청업체들도 이번 행정지시에 관련된 대부분의 조항들을 준수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14년 7월 31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Fair Pay and Safe Workplaces Executive Order" ("공정임금과 안전직장 관련 대통령 행정지시," 이하, "행정지시")를 바탕으로 작년 2015년 5월에 노동부 와 국방부등 연방 정부의 주요 기관들이 관련된 행정법규와 안내서를 공표하였습니다. 이 행정지시와 관련 법규는 연방 정부 공급업체들이 준수해오던 기존의 방법을 바탕으로 노동법 관련 위반행위를 보고하게 하는 것이 주요 취지로 되어있습니다. 과거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자동적으로 입찰과정에서 탈락되지는 않지만, 관련 당국에서 이 정보를 검토하여 입찰결정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 사항

연방정부에서 \$500,000 이상의 금액이 관련된 계약 입찰시 관련 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노동법에 관련된 위반행위 (행정 또는 사법적인 과태료나 벌금) 기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 모든 업체들은 본 업체의 하청업체들에서 같은 기록을 받아야 합니다.
- 업체는 하청업체와의 계약서에 이와 같은 기록을 공개할 의무를 반영하는 계약 조항을 첨가해야 합니다.
- 일을 시작한 후에는 6개월마다 관련된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임금 정보의 투명성

또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고용자들의 임금, 고용시간, 초과시간 (overtime), 그리고 기본임금 에서 추가나 공제된 금액들의 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하청업체도 같은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Fair Labor Standard Act, Davis-Bacon Act 와 McNamara-O'Hara Service Contract Act 를 따라야 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적용이 될 것 입니다. 여기 지정된 세가지 법들의 개요는 아래 "관련 노동법 목록과 개요"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계약서 중재 강요 조항 금지

\$1,000,000가 넘는 일을 수주 받는 업체들은, 고용인과의 고용계약서에 중재를

강요하는 계약 조항 (mandatory arbitration clause)을 첨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들은 인종차별에 관련된 사건들 (Title VII of Civil Rights Act of 1964) 이나 성폭행이나 성희롱에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시효기간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으나, 백악관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2016)에 이행 시작이 될 것이라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목록과 개요

이 행정지시에 해당되는 14개의 연방 "노동법"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아래의 법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연방정부 계약 입찰시 보고 항목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하의 14가지 연방법들 외에도 "유사한 주 정부법"들 관련된 위반사항도 계약 입찰시 보고내용에 포함이 될 것 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노동부는 "유사한 주 정부 법"에 관한 자세한 정의를 공표할 계획입니다.

1.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최저임금 (minimum wage), 추가근무시간 임금 (overtime pay), 기록관리 (record keeping) 그리고 미성년자 고용 등의 기준을 정하는 법으로서, 2007년 7월부터 시간당 \$7.25의 최저임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2.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0 (OSH Act)

직업성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기준을 정하는 법입니다.

3. Migrant and Seasonal Agricultural Worker Protection Act (MSPA)

1983년에 제정된 후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계절에 따라 이동하면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4.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NLRA)

Wagner법 이라고도 알려진 노동조합 (labor union)에 관련된 법입니다.

5. 40 U.S.C. chapter 31, subchapter IV, also known as Davis-Bacon Act (the DBA)

공적인 일(공사)을 하는 고용인들에게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임금을 주도록 명시한 법으로 \$2,000 이상의 일을 하는 업체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6. 41 U.S.C. chapter 67, also known as Service Contract Act (SCA)

연방정부와 계약금액 \$2,500이상의 일을 하는 서비스 업체들은 고용인들에게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임금을 (아니면, 기존의 단체협약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에 따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7. Executive Order 11246 of September 24, 1965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린던 존슨 대통령이 1965년에 서명한 행정지시이며, 매년 \$10,000 이상의 일을 하는 연방정부 상대 업체들이 고용차별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8. Section 503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10,000 이상의 일을 하는 연방정부 상대 업체들에게 지체부자유 장애인들의 고용을 장려하는 법입니다.

9. Vietnam Era Veterans' Readjustment Assistance Act of 1972 and Vietnam Era Veterans' Readjustment Assistance Act of 1974

연방정부 상대 업체들에게 베트남전 참전 후 전역한 군인들의 고용을 장려하는 법입니다.

10.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

직원 50명 이상의 업체들은 고용인들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일 년에 최고 12주의 무급휴가를 주도록 명시되어있는 법입니다.

11.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itle VII)

성별, 인종, 피부색, 민족, 종교 등의 이유로 고용인의 차별을 금지한 법입니다.

12.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DA)

지체 부자유인 들의 차별을 금지한 법으로서, 고용 및 교통, 공공장소의 입장 편의 등의 광범위한 각도에서 업체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3.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ADEA)

40세 이상의 고용자들의 차별을 금지한 법입니다.

14. Executive Order 13658 of February 12, 2014 (Establishing a Minimum Wage for Contractors)

2014년 2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후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연방정부와의 계약에 적용이 되는 대통령 행정지시입니다. 이와 관련된 업체들은 시간당 \$10.10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끝말

올해부터 시작될 노동법 위반행위 보고 요건은 많은 업체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청업체들도 이번 행정명령에 관련된 대부분의 조항들을 준수해야 하기때문에 직접 연방정부를 상대하지 않는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계획되어있는 정부의 추가 안내서가 발표 되는대로 다시 한 번 준수요건을 정리하여 글을 올리겠습니다.

활짝 열린 기업자금-파이낸스 원
www.finone.com

**파이낸스원과 함께 하십시오.
기업자금에 오아시스가 되어드립니다!**

언제나 기업자금의 목마름을 해결해 드리는
파이낸스원! 팩토링에서 무역금융까지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파이낸스원이 힘이 되겠습니다.

파이낸스원 서비스 · 팩토링 · 무역 금융 · 생산자 주문 금융 · Bridge Loans

Los Angeles Office

Tel: 213-430-4888 / Fax: 888-377-0286
801 S. Grand Ave. Suite 1000, LA, CA 90017

New York Office

Tel: 212-629-8688 / Fax: 212-629-6738
450 7th Ave., Suite 1006, NY, NY 10123



TRUST FUNDING의 중요성



김윤한, 공인회계사/변호사

2003년까지 One million dollar에 불과하던 상속세 면제액이 2011년 5million으로 늘어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면제 혜택을 받았지만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에 대한 중요성이 사라진것은 아니다. 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속을 하기위하여, 법원의 유언검증(Probate)을 피하기 위하여, 두번째 결혼의 경우 자녀들을 보호하기위하여, 또 상속세 절감을 위하여 상속계획은 필요하다. 2015년의 경우 상속세 면제금액이 \$5,430,000으로 변경 되었고 세율은 40%로 종전과 동일하다. 2015년의 경우 보고 및 납부대상이 되지않는 수증자 1인당 증여금액이 \$14,000으로 변경되었다.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Portability(배우자 사망시 사용치 않은 상속세 면제금액을 두번째 사망하는 배우자가 사용할수 있는것)는 2015년에도 유지되며 다만 이 혜택을 위하여는 첫번째 배우자 사망시 반드시 706보고를 9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Living Trust가 유언검증(Probate)을 회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란 것은 많이 알고있다. 하지만 Living Trust에 자산을 Funding(Transfer)하지 않으면 Living Trust는 형식에 불과하고 유언검증(Probate)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 변호사들도 때로는 자산을 Funding하지 않고 넘아가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서류상 Funding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부동산의 경우 funding은 deed를 Living Trust이름으로 바꾸어서 등기를 하면된다. 이 경우 재산세의 reassessment는 면제가 된다. 또한 community property state의 경우 community property가 100% step-up basis가 되므로 joint tenancy의 경우 일단 community property로 바꾼후 다시 living trust로 title을 바꾸는 것이 좋다.

은행 Account의 경우 Account의 소유주를 Living Trust로 바꾸면 된다. 이 경우 잘 이해하지 못하는 Vendor들이 check를 받는 일이 생길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름을 Living Trust로 바꾸는 대신 POD(Payable-on-Death) Account로 하여 예금주 사망후 은행이 beneficiary에게 지급할수 있게 할수 있다. 다만 POD Account는 alternate beneficiary를 지정할수 없는 단점이 있다. 주식의 경우 brokerage Account가 있는 경우 소유주를 Living Trust로 바꾸어 달라고 증권 회사에 요청한다. 이 경우 trust서류나 abstract of trust를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실제로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새로운 주권을 발행 받아야 할 것이다.

주식회사나 LLC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새로운 주권이나 LLC certificate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bylaw나 LLC operating agreement에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재산을 Living Trust로 transfer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실제로 재산을 control 할수 있는 것은 본인이다. 본인이 trustee이기 때문이다. Business ownership을 living trust로 이전한후 Bank Loan을 할 경우 Bank에서 주저 하거나 문의를 해올 경우가 있다. 이 경우 trust document나 abstract of trust를 보여주고 설명을 하도록한다. Income Tax보고시 Living Trust는 separate entity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개인 세금에서 보고하면 전혀 불이익이 없다.

Living trust는 단순히 설립하였다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고 funding절차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사항이 있는지 check하는것이 필요하다.





안소연, 공인회계사

회사형태 결정 창업부터 신중해야한다.

창업 할 때에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꼭 성공하겠다는 의지로 시작하지만 현실을 보면 세금, 법인설립, 라이선스 취득, 종업원 고용 등 해야할 일들과 결정해야 할 일들의 연속이다. 창업하기 전에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일들 중 하나가 바로 비즈니스를 어떠한 형태로 운영할 것인가이다. 개인비즈니스로 할 것인지, 아니면 파트너쉽, LLC, 또는 주식회사인지, 주식회사중에서도 S Corporation 으로 할 것인지? 각각의 형태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세금에도 영향을 주므로 어떤 회사의 형태가 나의 비즈니스와 상황에 적절한지 잘 비교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

몇가지 회사형태 중 창업하기 가장 쉽고 설립비용이 적게 드는 비즈니스 형태는 개인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이다. 회사설립 절차는 상호등록과 필요한 라이선스만 취득하면 되고, 세금도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해서 보고하면된다.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것은 사업주의 책임한계가 없는 무한책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이나 투자자 영입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사업 형태를 고려해야한다.

파트너쉽은 앞서 말한 자영업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의 파트너와 함께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며, 투자자의 책임의 한계를 정하는 유한책임 투자자와 책임한계가 없는 무한책임 투자자를 둘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트너쉽의 경우 계획하는 사업과 투자자의 수 그리고 책임의 한계, 손익분배 등을 동업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게되므로, 자영업보다는 챙길 것이 많고,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창업부터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하다.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는 각 주정부의 승인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 전형적인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과 폐업의 절차가 간단하고 세금혜택이 있어서 최근 많이 선호한다. LLC 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한책임이므로 채무자로부터 개인의 재산을 지

킬 수 있으며, 세법적으로도 다른 비즈니스 형태보다 유기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멤버(투자자)가 혼자인 경우는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이용하면 되고, 2명 이상의 멤버일 경우는 주식회사와 파트너쉽 중 선택해서 보고할 수 있다. LLC 규정은 주 정부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금의 종류와 부과하는 방식 또한 다르므로 여러주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이 점을 잘 유의해야 할 것이다.

S Corporation 은 LLC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면서 유한책임을 질 수 있는 회사형태이다. 즉 법인소득이 그대로 주주에게 전해져 주주의 소득세신고에 반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C Corporation 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며, 법인의 손실과 개인의 소득을 상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법인과 달리 주주들에 대한 조건에 제약이 따른다. 주주의 수는 100명을 넘을 수 없으며, 주주는 개인, 특정 트러스트, Estates 이 될 수 있지만 파트너쉽, 주식회사, 외국인인 주주가 될 수 없다. 주식은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하도록 제한하고있다.

일반법인인 C Corporation 은 앞서 S Corporation 처럼 주주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이중과세라는 단점이 있다. 이익에 대해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주주가 법인차원에서 이미 세금부담한 수익에 대해서 배당금을 수령했을 때 주주는 다시 한번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개인차원에서 납부하게 되어 같은 소득에 대해 두번의 세금을 납부하는 이중과세 부담이 있다. 그러나 법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 남겨둔다면, 경우에 따라 세금은 S Corporation 보다 낮을 수 있으며,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절세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C Corporation 의 경우 종업원으로써 일하는 주주는 의료보험, 상해보험, Group term life insurance 등 부가적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역시 매력으로 작용된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중에는 S Corporation 은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인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S Corporation 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주주가 신고해야하므로, 주주가 그 이익금을 회사로부터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만약 주주의 개인세율이 높다면 상대적으로 법인세보다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연결되는 또다른 오해는 C Corporation 은 세금을 두배로 낸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익금에 대해 주주가 배당금을 받지 않는 한 세금은 없으며, 두번째 부담하는 배당세율은 소득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두번에 걸쳐서 세금부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중과세"라는 표현이 가져다 주는 두배의 세금이라는 뉘앙스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창업지역 선택 역시 중요하다. 지역에 따라 세금크레딧 유무가 결정되기도 하고, 주에 따라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주와 면세되는 주가 있고, 세율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정부 또는 로컬정부의 경제적 지원 역시 창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창업자는 먼저 자신이 또는 비즈니스가 처해있는 주변 환경, 직면한 상황과 성격을 잘 이해해야한다. 그리고 비즈니스 경험, 투자방식, 투자의 규모 그리고 비즈니스의 전망과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비즈니스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비즈니스는 Going Concern 을 전제로 창업된다. 그러나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비즈니스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비즈니스 형태를 단순비교가 아닌 다양한 비교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들 단순히 세금만 절세할 수 있는 장점만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자칫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겠다.

e-Consultants Inc.

Technology Consultants for Tax & Accounting Professionals

333 Sylvan Ave. Suite 210 Englewood Cliffs, NJ 07632

Tel : 201-568-2928 Fax : 201-399-2850

미주 한인 공인회계사 님들께



THOMSON REUTERS



Why switch to UltraTax?

For the 7th year in a row (2009~2015), Thomson Reuter's UltraTax has earned the highest overall rating ahead of Intuit's Lacerte, ProSeies and CCH's Prosystem Fx according to the 2015 tax software survey conducted by the Journal of Accountancy (JofA) and Tax Advisors.

Why buy UltraTax from e-Consultants Inc.?

- e-Consultants을 통하여 UltraTax Program을 구입하실 경우 상당한 가격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We have been supplying tax software to Korean CPAs since 1987
- 이미 많은 한인회계사님들이 e-Consultants을 통하여 UltraTax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 Ten of twelve KASCPA National presidents
 - Over 93% of all practicing Korean CPAs and EAs in greater NY area (NY, NJ, CT, DE, PA)
 - Over 160 practicing Korean CPAs in Los Angeles
 - Over 80% of KASCPA New York Conference attendees (pictured above) in September 2015

Contact: Mitchell Kang (미첼 강)

Office : 201-568-2928

Direct : 201-232-039



투자과 삶

이원창,
California Bank & Trust 지점장

커런시 마켓, 소위 환투자. 쉬운 분야가 아닙니다. 환차를 노리고 중국 마켓에 뛰어 들었다가 중국 마켓의 일시붕괴를 보고 급히 빠져나온 사람이 한 둘이 아닙니다. 이미 알았을 때는 늦은 거지요. 지난 몇 주 동안에 엄청난 자금이 중국 시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12 퍼센트의 상하이 주식시장 다운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환차를 노리고 들어온 외국자본의 급격한 도주(?)입니다. 마켓 다운, 그 타이밍을 놓친 거죠. 20세기 경제학 이론을 리드한 케인즈 박사! John Maynard Keynes 하면, 비즈니스 문외한도 몇 번 쯤 들었을 법한 경제학의 대가입니다.

당대 최고의 거시 경제학자로 "수요가 비즈니스를 창출한다." "경기의 회복을 위해서는 큰 손, 즉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2007년 시작된 Great Recession 경기침체에 대한 각종 해결책이 제시 되었지만, 노벨 경제상을 수상한 폴 크루거먼 교수, 실러 예일대 교수, 벤 버냉키 전 연방중앙은행 총재는 케인즈의 경제이론에 근거를 두고 정부가 많은 자금을 시중에 풀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론에 통달했던 케인즈도 일찍이 커런시 마켓, 즉 환차를 노리고 외국환 투자에 뛰어 들었다고 합니다. 1936년, 대공황이 지난 몇 년 후, 커런시 마켓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도 약 25만 파운드, 지금 돈 약 2천 3백만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당시 마켓이 상승세였음에도 그가 올린 수익은 2.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1933년경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본위 통화제도를 포기할 무렵 바로 직전에 달러화의 강세를 예상했다가, 달러의 약세로 손실을 보았고 프랑스와 네델란드가 금본위 통화제를 바꿀 것 역시 미리 예상 했었지만 환차에서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예상은 맞았지만, 너무 일찍 예견함으로써 정확한 타이밍을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저명한 경제 학자를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겪은 실제 마켓 투자에서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박식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결정적 요인, 즉 타이밍을 놓치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경험이 풍부하다 해도 큰 손실을 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헤지 펀드 투자자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해도 그를 따르는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돌려 달라고 해서 중도에 자금을 돌려 준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최



근 나온 영화, "The Big Short"를 보면 모기지 본드가 붕괴할 것으로 정확하게 예상해서,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등을 상대로 역투자한 전문가에게, 투자자들이 미리 겁먹고 자금을 돌려 달라고 여러 수단을 통해 협박을 합니다. 너무 일찍 예상했지만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천만 달러를 손해 보면서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 결국 400%의 투자이익을 내게 됩니다. 만일 중도에 자금을 회수했다면 큰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다시 음미하는 의미에서 마이클 루이스의 원작 "The Big Short"를 권하고 싶습니다. 케인즈의 투자 경험을 보면 커런시를 포함한 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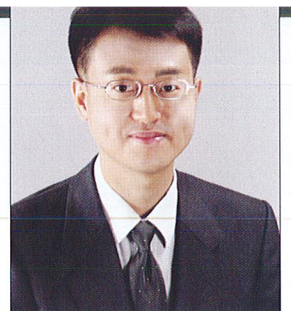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고 케임브리지 경제학자 데이비드 체임버스는 밝히고 있습니다. 대공황 때 주식투자에서도 케인즈는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고 그는 부연했습니다.

여기서 배울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가능성이 있는 주식에 투자해서 장기 전략으로 가는 것, 즉 워런 버핏* 식 투자로 가는 겁니다. 신중한 분석을 통해 일단 그 주식을 매입하면 끝까지 홀드하는 것입니다. 내버리지 않습니다. 배신(?)하기 전에는 ㅎㅎ. 만약 어긋나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서도 처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지, 그래서 팔았습니다. 둘째, 자신 보다도 자신의 반대편에 선 투자가가 자신 보다 더 많이 알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더 가질수록 기대와 틀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삶의 경우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어느날 부인과 다투었습니다. 자신이 분명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양보하지 않았습다. 큰 소리로 나의 주장을 외쳤습다.. 몇 밤 자고 나서 보니, 그제서야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자신이 넘칠 때, 그 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투자하는 것은 마치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기분에 취해 혹은 자신감이 넘쳐 주식을 샀다가 후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지나서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으면 택하는 겁니다. 가치가 떨어졌다해서 처분하지 마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안이 무너져도 끝까지 가야지요. 바로 워런 버핏식 투자 방식입니다. 참, 그 역시 한번 헤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단, 첫번째 부인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재 투자 하지는 않았습다.

* 참고: Berkshire Hathaway Portfolio



강익수, 공인회계사

이중지위 납세자의 세금보고

미국 연방소득세법상 미국 거주자(미국 시민권자 + 미국령 거주자 + 영주권자 + H1/E2 등의 Resident Alien)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수입(Worldwide Income)을 보고해야 하며, 비 거주자(Nonresident Alien)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보고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으로 이주한 첫 해나,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해에는 일년중 일정기간은 미국 거주자 이고 나머지 기간은 비거주자이므로 Dual-status alien 으로서의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자 (Resident Alien)의 자격요건

1) 영주권 테스트 (Green Card Test)

미국 영주권자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합니다.

2) 거주 일수 테스트 (Substantial Presence Test)

비영주권자인 경우 미국에 실제로 체류한 일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거주 조건이 충족되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a) 당해연도에 최소 31일 이상 체류했고, b) 지난 3년간의 총체류일이 183일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183일을 계산하는 방법은, 당해에 거주한 체류일은 100% 인정되며, 그 전년도는 1/3만 인정되고, 2년전의 체류일은 1/6만 인정하게 됩니다.

2. 이민 첫 해에 체류한 기간을 거주자로 선택할 수 있는 자격조건 (First-Year Choice)

미국에 입국한 첫해에 체류기간 부족으로 비거주자로서 세금보고를 해야 할 경우,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에 체류한 기간을 거주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첫 해에 최소한 연이어 31일 이상 체류해야 하고, 2) 이 체류기간 시작일 부터 연말까지 최소한 75% 이상을 체류해야 합니다.

이 First-Year Choice는 싱글이나 부부 모두 선택할 수 있으며, 미국에 입국 후 두번째 해에 위의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만족한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10월 초에 입국한 경우 다음해 6월 초까지 기다렸다가 세금보고를 해야하므로 4월 15일에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해야하며, 세금보고시 First-Year Choice 를 선택한다는 Statement 를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첫해 전체가 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31일 이상 체류의 시작일 (10월 초) 부터 거주자가 됩니다. 예를들어 유학생 신분에서 H1B 비자로 변경한 경우, 보통 10월 1일에 일을 시작하는데 유학을 마치고 OPT 기간에 체류한 기간은 Exempt individual 신분이었으므로 체류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거주 시작일은 10월 1일이 됩니다. 이 경우 9월까지의 비거주자 신분이므로

Dual-Status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3. 이민 첫 해에 부부가 일년 전체를 거주자로 선택할 수 있는 자격조건

싱글이 아닌 부부인 경우에 다음의 네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년 전체를 거주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연초에는 비거주 외국인이고, 2) 연말에는 거주자 혹은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3) 연말에 미국 시민권자 혹은 거주자와 결혼했고, 4) 부부 모두가 동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일년동안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world-wide income)을 부부가 공동(Married Filing Jointly)으로 보고해야하며, 거주자로 보고한다는 Statement 를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선택을 하기 전에 고려할 점은 비거주자 기간에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 외국에 금융계좌가 있었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유학생이 OPT 기간동안 봉급을 받았을때 비거주자 신분을 적용 FICA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 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거주자로 선택을 할때 FICA tax 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이중지위 납세자의 세금보고 (Dual-Status Tax Return) 방법

일년중 일정기간은 미국 거주자 이고 나머지 기간은 비거주자인 경우 이중 지위 외국인(Dual-status alien)으로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체류한 기간의 구별

비거주자로서 체류한 기간동안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보고하면 되고, 거주자로서 체류한 기간동안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2) 거주자로서 체류한 시작일의 결정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만족할 경우는 미국에 처음 입국한 날짜가 되며,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주권자로 미국에 체류한 첫날입니다.

3) 세금보고 양식(Form)의 결정

a) 연말에 거주자 신분인 경우: 거주 기간동안의 소득을 Form 1040 을 사용하여 보고하고 상단에 "Dual-Status Return"이라 명기해야 하며, 비거주 기간동안의 소득은 Form 1040NR 을 사용하여 보고하고 상단에 "Dual-Status Statement"이라 명기하여 Form 1040 다음에 첨부합니다.

b) 연말에 비거주자 신분인 경우: 비거주 기간동안의 소득을 Form 1040NR 을

사용하여 보고하고 상단에 "Dual-Status Return"이라 명기해야 하며, 거주 기간 동안의 소득은 Form 1040 을 사용하여 보고하고 상단에 "Dual-Status State-ment"이라 명기하여 Form 1040NR 다음에 첨부합니다.

5. 이중지위 납세자 (Dual-Status Taxpayer)에 대한 제한사항(Restrictions)

- 1)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는 사용할 수 없고,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만 사용해야 하고,
- 2)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를 신청할 수 있으나 거주자로서 체류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소득까지만 허용되고,
- 3) 세대주(Head of household)에 적용되는 세율로 세금을 계산할 수 없으며,
- 4) Dual-Status Taxpayer가 결혼을 했더라도 부부 공동보고(Joint Tax Return)를 할 수 없으나, 미국 시민권자 혹은 거주자와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거주자 신분을 부여하는 선택을 한다면 부부공동보고를 할 수 있고,
- 5) 부부 공동보고를 선택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각종 세액공제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Earned income credit, Education credit, Credit for elderly or disabled)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Child Tax Credit

과 Foreign Tax Credit의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미국으로 이주한 첫 해나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해에Dual-status alien 으로서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데, 고려해야할 사항과 제한사항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 U L E R H E R M E S

더

거래처 야반도주 이젠 문제 없습니다.

힘겹게 일궈 놓은 비즈니스가 거래처의 야반도주로 인해 일순간에 나라으로 떨어지는 것은 결코 남의 일아 아닙니다. 이제부터 상업 신용 보험에 가입해 편안한 마음으로 사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십시오. 풀 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의 (661.373.5254) 하세요!

EULER HERMES는 어떤 회사인가

- 무역 금융 강화
- 상업 신용보호
- 매입자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

“상업 신용 보험이 마음의 평화와 사업성장의 확신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상업 신용 보험을 구입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신용 기능 지원
신용 의사 결정을 위한 체계 및 규율 제공
고객 가망 고객 산업 및 국가에 대한 신속하고 사실에 기반을 둔 신용 결정
추진을 위해 보험사의 영향력 및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문제 고객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

-수출 영업 보호
한 해 내내 신용장 없이 제시된 조건을 제공
정치적 위험으로 부터 보호(통화, 수출입 변화, 외국 정부)
은행 여신 한도로 수출 수취 계정에 대해 차입 용이

-재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유동성을 강화하고 회사 가장 큰 자산중 하나인 외상 대금 보호
대손금에 대한 위험 감소
중요 고객 집중으로 인한 위험도 감소

-매출 확장
위험 요소가 더 많은 시장이나 새로운 시장으로 매출 확장
추가 위험 없이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관계 향상
기존 고객과 함께 성장, 새로운 고객 창출에 유리

EULER HERMES
A company of Allianz

Paul Chun, Agent
Euler Hermes
License# OH84390

Cell (661) 373-5254
Fax (818) 226-5801

paul.chun@eulerhermes.com
www.eulerhermes.us

3011 Townsgate Road #130
Westlake Village, CA 91361


Richard Wang, 공인회계사

Dealing with Cloud Computing Arrangements

With the passage of time, technology seems to never fade and continues to march along with the evolutionary footsteps of science and business. With that, the broader environment we live in must adapt to the changes brought on by technology. As a result, the folks that govern society and businesses must keep pace with the changing times and grapple with the forces brought on by technology. The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environment is no exception. The standard setters for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continue to play catch up to the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and they must evaluate and provide guidance so that there is an element of consistency across different businesses from the kinds of impact on businesses rooted in the evolution of technology.

In April 2015, the FASB issued ASU No. 2015-05, Intangibles-Goodwill and Other-Internal-Use Software (Subtopic 350-40), Customer's Accounting for Fees Paid in a Cloud Computing Arrangement. This ASU was issued as part of FASB's Simplification Initiative to improve the areas of GAAP for which cost and complexity can be reduced while improving the usefulness of the information provided to users of the financial statements. Further, existing literature did not provide guidance regarding a customer's accounting for fees paid in a cloud computing arrangement, and as a result there was diversity in practice regarding financial reporting for those entities with such arrangements.

The ASU provides guidance about whether a cloud computing arrangement includes a software license, and if it includes a software license, then the customer should account for the software li-

cense element of the arrangemen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acquisition of other software licenses. I.e., it should be capitalized and amortized over the life of the license. If a cloud computing arrangement does not include a software license, the arrangement should be accounted for as a service contract and charged to expense as incurred. While the FASB expected this new ASU to quell the concerns of reporting entities regarding their accounting for cloud computing arrangements, companies are finding that the clarity provided by this guidance was less than crystal clear. From a practical standpoint, ASU 2015-05 only provides guidance regarding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 cloud computing arrangement includes a software license, but if it did not, the guidance falls short on how to account for what they do have.

The basics of the new guidance is that customers in a cloud computing arrangement need to first determine if they have the contractual right to take possession of the underlying software without significant penalty. If it is determined that the company can indeed take possession of the underlying software without significant penalty, an assessment must be performed whether it is feasible for the company to either run the software on its own hardware or to contract with another party to run the software. If the company meets both criteria, the arrangement is considered to have multiple elements that include a software license and a cloud service component. If the arrangement does not meet both criteria, the arrangement is deemed to not contain a software license and therefore are considered to be service contracts.

Some complications begin after such determina-

tion. It is common for some companies to pay some costs to the vendor up-front, and if the arrangement is deemed to be a service contract rather than containing both a software license and a service component, what is the proper accounting treatment for those up-front costs? Some companies have considered those to be intangible assets, a prepaid asset, but there has not been a consistent application and this ASU is silent on the matter.

Therefore, companies should undertake an evaluation in alignment with the basic cost guidance, focused on what the company is getting for its costs. Some questions to consider are: How will this decision impact the balance sheet? Is the up-front payment capitalizable? If it is deemed to be capitalizable, should it be classified as a prepaid asset, an intangible asset, or some other type of asset? How will this decision impact the income statement? Will all or some of the costs be expensed immediately? Or is it more appropriate for the costs to be depreciated or amortized? Further, the conclusions reached may also affect the cash flow statement (operating vs. investing), and other metrics such as EBITDA.

Additionally, these agreements often include terminology such as "configuration," "integration," or "implementation" that may not be specific enough to know exactly what the company is receiving for its costs. Therefore, companies should perform a critical reading of contracts and also hold focused dialogue with internal IT and external providers. Such exercise may be necessary to conclude on what the company is getting, which will then help them determine how to account for the cloud computing arrangements.



귀한 선물

김종천, 공인회계사

“안녕하세요?”

세금보고를 하시겠다고 전화로 미리 약속을 하신 분이였다. 어떤 분한테서 나를 소개 받았다고 하셨다. 사무실 방에 들어오신 그 아주머니의 허름한 첫 모습에서 좀 어렵게 사시는가 보다 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 분은 어딘가 불안해 하시며 시선을 한 곳에 모으지 못하고 내가 말을 할 때에는 오랫동안 눈을 감고 계시기도 했다.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 아주머니께서 작년의 수입 내용을 보여 주셨다. 식당에서 일을 하셔서 받으신 월급이었다. 아니 이렇게 벌어서 어떻게 살아가시겠나 할 정도로 너무나 적은 액수의 월급이었다. 보통 납세자들은 세금을 적게 내려고 실제 수입보다 정부에 보고하는 수입을 가능하면 줄이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금 수입은 대부분 보고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이 분은 이 자그마한 수입이 진짜 전부라는 것을.

가족도 없이 혼자 산다고 하셨다. 나이는 겉모습으로는 60대, 그러나 사실은 50대 초반이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며 살아왔다고 했다. 사실 그 분이 굳이 말씀을 안하셔도 그 분의 모습에서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지나간 아픔의 시간들이 그 분의 무표정에, 그리고 크고 작은 주름들 속에 깊게 각인이 되어 있었다.

“저……. 그런데……. 이거 세금보고 하는데 얼마죠?” 조심스럽게, 그리고 불안해 하면서 물어 보셨다.

‘그냥 해 드릴게요.’라고 대답을 하려다 말고, 잠시 멍쩍은 웃음을 짓고 나는 대답을 하였다.

“XX를 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나는 이 분의 자존심은 지켜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나보다. 그 아주머니는 뜻밖의 적은 수수료에 놀라하시며 어린이처럼 너무 좋아하셨다.

그 날 이후 며칠 동안 그 아주머니의 모습이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운전할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에도, 씹다 버린 껌이 머리에 붙은 것처럼 그 분의 모습이 내 머리에 붙어버렸다.

며칠 후에 그 아주머니는 마무리 된 자신의 세금보고를 가지러 오기 위하여 다시 내 사무실에 들르셨다. 그 분과 거의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나 보다. 한창 바쁜 세금보고 시즌에는 손님들과 가능하면 세금보고 자료에 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만 하곤 했던 나였다. 그런데 다른 손님들과 달리 그 분과는 시간을 일부러 내어 얘기를 듣고 싶었다. 그 아주머니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궁금했다. 이곳 미국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결혼은 하셨는지, 자녀가 있으신지,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으셨는지……

그 분은 주로 일반적인 신앙에 대하여 얘기를 하셨다. 그 분의 구체적인 삶이 어

떠했었는지 궁금했지만 계속 참고 있었던 나는 결국 용기를 내어 물어 보았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나의 질문에 그 아주머니는 대답 대신 그시 눈을 감고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 흐르는 시간 속에 조금은 불편한 고요함이 점점 더 나를 목마르게 옥죄어 왔다. 메마른 고요함이 깊어져 벽걸이 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들리는 듯 했다. 꼭 다문 입술가에 작은 경련이 있을 후 그 분의 눈 가에서 무거운 눈물이 흘러 내렸다. 또 한참의 침묵이 지나고 분위기가 어색해 지려고 할 때였다.

“그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요…….”

또 다시 흐른 오랜동안의 침묵. 한참을 더 망설이더니 말을 이으셨다.

“제가 살아 온 것을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에게 괜히 피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은 끝내 자신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건조한 모습 속에 깊이 스며 들어있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은 숨길 수 없었다. 오랫동안 이어온 극심한 인생의 가뭄 속, 메마른 삶의 호수바닥의 갈라진 틈 사이로 그녀의 길은 어두움은 이미 나직이 드러나 있었다.

서류를 받아든 그 아주머니는 자리를 뜨면서 미리 준비한 두툼한 마켓봉투를 나에게 내밀었다.

“이것 받으세요.”

“이게 뭐죠?”

나는 봉투를 받았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속에 한가득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열어 보았다.

누룽지였다.

“너무 감사한데 드릴 게 별로 없어서요…….”

그 아주머니가 사무실 방을 나간 후에도 나는 그 누룽지 봉투를 들고서 한동안 서 있었다. 가슴이 너무 너무 따뜻해졌다. 아니 뜨거워졌다. 그 뜨거움이 올라와 어느새 눈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그 누룽지 봉투를 꺼안은 채.

나는 참으로 귀한 선물을 받았다.





이승수, 뉴욕 세무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사례



한국에 집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좋을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당해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5월에 국세청에서 새로운 해석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은 취업 출국 후 전세대원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출국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3.11월에 甲은 서울 마포구 소재 A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甲의 가족은 본인, 배우자, 자녀, 甲의 부모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1월에 甲의 자녀가 미국 유학을 위해 출국할 때 甲부부도 함께 출국하였습니다. 甲은 워킹비자로 출국하였으며 甲의 부모는 계속 국내 거주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0.10월에 甲의 부모는 여윌돈을 가지고 국내 B주택 취득하였습니다. 甲의 부친은 퇴직공무원으로 연금소득자로서 주택을 취득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2013.10월에 甲과 甲의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9월에 영주권자 甲은 미국에서 기존 한국의 A아파트를 양도하였는데 이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 법 규정에만 충실하면 甲은 출국 후 2년이 되는 2008년 12월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이 시기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영주권 취득인 2013년 10월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주권 취득시기와 주택 양도 시기를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일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은 과세 당시의 사실관계에 따라 면밀하게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례에서 甲과 甲의 부모는 같은 곳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것인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세대원 중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도록 합니다. 이 건의 경우 甲은 출국한 전세대원이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는 퇴직공무원으로서 별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며 영주권 취득 후 2년 이내인 2015년 9월에 출국 당시 보유하고 있던 마포구 소재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甲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24%~80%)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인 30% 한도로 적용되므로 한국 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겁니다. 다행히 甲은 출국 후 8년이 지난 후에 한국의 집을 팔았는데도 국세청 해석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어서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담과정에서 현지에서 직면하는 현실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도와 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리적인 접근성이 불편하여 LA쪽 교포분들과 많은 접촉을 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교포분들이 한국과 미국 양 국가에서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부에도 유능하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국제주재관이 생겨서 세무상 리스크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James Cha, 공인회계사

2015 & 2016 개정 세법

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다 저물고 2016년이 밝아 온다. 이는 힘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제대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대이상의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 납세자들도 2015-16년에 변경되는 세법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California 근로소득 세액 공제

연방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세액 공제 중 하나가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이다. 2015년 세금 보고부터는 California에서도 EITC의 환불 가능한 세금 혜택이 제공되기 시작한다. 특이한 점은 연방 세법과 달리, 자영 수입이 주정부 근로 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또 다른 점은 부부들도 독신이나 세대주와 같은 액수의 Credit을 받게 된다. 근로소득이 유자격 자녀(Qualifying Child)가 없는 경우 \$6,580, 한 명인 경우 \$9,880, 두명 이상인 경우 \$13,870 미만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2015년에는 계산을 거쳐 산출된 Credit에 85%를 곱한 액수가 최종 Credit 액수가 된다.

유의할점은 CPA나 세금보고 작성자들이 증빙 서류나 정보 확인절차 (Due Diligence)를 따르지 않을 경우 \$500의 벌금이 부과 된다. 따라서 연방법에 의한 벌금까지 감안하면 \$1,000이 되는 셈이다. 이 Credit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FTB 3514와 3596 양식을 세금 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감사에 대비해서 자녀들과 납세자의 관계, 또 자녀의 거주지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 놓아야 한다.

카지노 수입

그동안 애매모호 했던 카지노 수입의 순수의 계산 방법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발표 되었다. 카드 게임인 경우에는 그날 하루의 첫 내기돈 (Wager)을 건 시간부터 마지막으로 건 시간 까지를 단위로 계산

하면 된다. 전자 슬롯 머신인 경우에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한 카지노를 떠났다가 다시 입장하여 시작할 때 새로운 Session이 시작 된다.

College Access 세액공제

California에서 Cal Grant의 fund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 세법에 따라, 개인이나 사업체가 이 fund에 보낸 현금 기부에 대해 세금 공제를 할 수 있다. 2015년에는 기부액의 55%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2017년 까지 50%를 공제할 수 있도록 연장 되었다. 이렇게 되면, 연방 세금 보고서에서도 자선기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방 최고 세율에 해당될 경우에는 결국엔 최고 94.6%까지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Credit을 신청하려면 CEFA Office에 2016년 1월 4일까지 접수 시켜야 한다.

사업자산 비용처리 한도액 대폭 증가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중 하나가 모든 구입비나 개조비를 그해에 전부 공제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부분이다. 현재까지는 사업용도의 구입비나 개조비를 일단 자산으로 잡은 후에 감가상각할 필요 없이 당해 연도에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소액 안전시행법 (De Minimis Safe Harbor) 액수가 Item당 \$500이었으나 2016년 부터는 \$2,500로 대폭 증가 되었다.

이 한도 액수까지는 작은 액수들을 일일이 자산 처리나 비용처리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고를 덜은 셈이고, 국세청 감사를 받아도 이 액수까지는 도전받지 않게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수가 있다. 하지만 외부 감사 재무제표가 있거나 SEC나 정부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가 있을 경우에, Item당 \$5,000까지 허용하는 조항은 변함이 없다. 이 외에도 다른 예외 조항들을 이용하면 자산 처리 하지않고 비용처리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므로 담당 회계사에게 자문을 받으시

기를 바란다.

W-2, 1099, 1098 양식 보고 누락 벌금 인상

사업체들은 W-2, 1099, 1098 양식을 받을 사람들이 그들의 세금보고를 작성할 수 있도록 양식을 보내주고 정부에도 보고를 해야 하는데, 마감일을 놓칠 경우에 건당 \$100의 벌금이 부과되어 왔다. 이 벌금이 2016년 보고철 부터는 \$250로 2배가 넘게 인상이 되었으므로 특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매년 최고 벌금 액수도 3백만 달러로 상향 조정 되었다. 만일 고의적으로 보고 의무를 무시한 경우에는 건당 \$500로 뛰게 된다.

2016 소득세 보고 마감일의 변화

2016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부터는, 개인 및 주식회사의 세금보고는 4월 15일로 마감 (연장 마감 10월 15일)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지만, 파트너쉽의 경우는 세금 보고 마감일이 현행 4월 15일에서 3월 15일로 앞당겨진다. 또, 일반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12월 31일 마감이면 3월 15일에서 4월 15일로, 연장 마감은 9월 15일에서 10월 15일로 미루어진다. 세금 보고철의 효율성을 감안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도 그동안 연장 없이 6월 30일 마감하던 것을, 개인 세금보고와 같이 4월 15일로 앞당기고 대신 연장 기간을 신설해 10월 15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 소득세 보고 마감일

이번 세금 보고철의 마감일이 4월 15일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인 4월 18일로 미뤄지게 되었다. 이는 District of Columbia의 법적 공휴일이 토요일이 되는 이유로 연방 세금 보고 마감일도 조정되게 된 것이다. California주 세금보고 마감일도 같이 미뤄진다.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 적용되는 여러 변화들이 있으므로 세금보고 마감일에 임박하기 전에 담당 공인 회계사와 미리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준순, 공인회계사

연말 절세 계획

연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년에 신고해야 할 세금보고에 대한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내년 4월 15일 즈음에 급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연말에 준비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 세금계획은 내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합법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을 근거로 해서 다가오는 해에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 할 수 있습니다.

절세하기 위해 연말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선단체 기부

더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물품을 찾기 위해 옷장, 지하실 및 기타 저장 공간을 정리하십시오.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자선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격이 상승한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팔지 않고 가격이 상승한 주식을 자선단체에 기부하십시오. 이 경우 매각 후 발생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상승한 금액만큼 자선단체 공제 금액으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비용을 미리 납부

주정부 세금, 재산세, 또는 의료비 등을 납부해야 할 때 2016년에 납부하지 않고 2015년도에 미리 납부해서 2015년도 당해년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의 납부기한이 다음해다 할지라도 당해년도에 납부했을 경우 당해년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손실 실현

투자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12월 31일 이전에 처분하면, 손실을 실현하여 세금공제를 받거나 다른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쇄할 수 있습니다.

퇴직구좌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에 납입을 하는 것도 세금공제의 또다른 방법입니다. 2016년 4월 15일까지 납부하면 2015년 세금보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점검

납세자의 나이가 70세 만을 넘은 경우, 납세자의 401K와 IRA로부터 적립된 금액을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 수령된 금액은 연방 정

부에서 제공하는 표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수령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세금과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401K와 IRA 관리인으로 부터 연말에 적립된 금액을 수령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원천징수 금액 확인

월급수령시 원천징수금액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보고시 추가로 납부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인사과나 또는 급여 부서에 확인하고 원천징수 금액을 많이 할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금보고시 환불을 너무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면 회사에 원천 징수금액을 줄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Dependent)의 ID확인

자녀나 피부양자가 SSN가 없는 경우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확인하고 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SSN이나 TIN이 없으면 IRS는 피부양자의 인적공제 금액 \$3,950을 허용해 주지 않고 17세 이하인 자녀에 대한 Child Tax Credit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이혼했을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부모중 한 사람만이 자녀에 대해서 피부양자로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미 국세청은 두 부모가 같이 부양가족으로 한 자녀에 대해 클레임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같이 클레임 했을 경우 세금 프로세싱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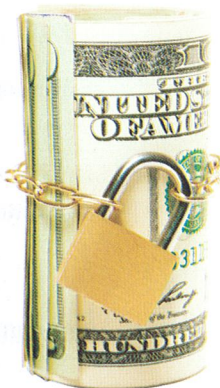
만약 아기를 출산했을 경우 SSN를 바로 받게 되지만 못받았을 경우 내년 세금보고시 아기의 SSN없이 보고하는 것 보다는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세금 보고 전문가에 대한 만족도 검사

연말은 지난해 세금보고를 준비해 준 전문가에 대해 검토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필요한 요구와 궁금한 질문에 응답을 잘 했는가? 지식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는가? 받고 있는 서비스에 만족 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오"일 경우 다른 전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연말은 세금계획에 대한 의견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간입니다.

연말은 일반적으로 파티, 휴일, 휴가 등으로 바쁜 시간입니다. 그러나, 절세에 대한 계획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연말 절세 계획은 세금납부금액을 합법적으로 최소화하고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라면 연말에 납세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언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니 강, 공인회계사

나에게 보내는 새해 인사

2016년, 새해이다. 한결같은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우리는 빼 먹지 않고 건넨다. 같은 말이어도 진심으로 건네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로 복 좀 많이 받았으면 하는 사람들, 행복했으면 하는 사람들. 행복을 느끼고, 그걸 누림에도 내 스스로의 적극성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온다.

흠~ 안 되겠다. 일단 결정하고 보자.

행복하기로 ... 그리고 그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사고 또는 행동 양식의 의도적으로 방향 조절하며 사는 것도 효과가 있음을 난 이미 알고 있다.

얼마 전 여자 셋이서 점심을 하는데.

A가 생뚱맞게, “무슨 재미로 사세요?” 하고 갑자기 질문한다.

B가 가볍게, “왜요? 사는게 다 재미죠. 이렇게 만나 맛있는 점심먹는 것도 재미이고, 요새 연말이니 예쁜 옷 입고 어디 연말 모임가는 것도 재미이고.... 그런데 다 재미나지 않아요?”

A: 아, 그래요?

후후.. 맛다. 매일이 다른 시간임에도, 사는 건 거의 반복이다. 내 주위의 일상을 대하는 태도에서 삶의 질이 다르게 결정될 것이다. 일과 삶의 반복. 생존을 위해 해야 하는 일과 그 사이사이의 작고 사소한 삶의 이벤트들로서 하루의 시간이 채워진다. 그리고 삶이 갖고 있는 그 리듬은 내가 어떠한 욕구를 지니고, 얼마 만큼의 애 씬으로 그것을 채워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반복은 즐겁, 혹은 반대가 되기도 한다.

한해 한해 넘어가면서 신체적 나이와 함께 생각등도 좀 너그러워져서일까.. 내게 욕구, 욕망이란 단어는 실은 점점 더 애매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걸 귀찮아 하고, 전에는 즐거워 하던 일들도 흥미가 점점 없어짐을 느낀다. 그냥 자연스레 이런 현상을 받아 들일 것인지, 아니면 위에 적은 글처럼 방향 조절하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성을 띠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유일하게 빨라진 것 중의 하나는 그리 변해 가는 나를 인정하는 속도다.

12/26 일 아침, 다섯명의 여자들이 모여 팜스프링스로 향했다. 여자 CPA 몇명이 식사하면서 어쩌다 이야기가 나와 1박 2일 X-Mas 이후의 간단 쇼핑과 하루 골프하는게 어떨까요? ~로 시작했단다.

내 개인적 특성 중 하나는 돌아 다니는 것을 그다지 힘들어 하지 않고,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곧 다가올 택스 시즌에 한 4개월 가량을 거의 하루에 10시간 이상 책상과 컴퓨터를 벗 삼아 지내야 하는 우리들에게 tax season 시작 전, 위로 여행 1박 2일이라고 이름 붙이고 4명의 여자 CPA 들과 우리의 Susan 이 뭉쳤다. 골프를 안 하는 나는 혼자서도 잘 노니까, 이틀째 아침에 혼자 알아서 놀기로 하고 계획을 잡았다.

팜스프링스에 올라가는 길에 안 들르면 좀 서운한 아웃릿 쇼핑이 첫번째 코스. Buy Experiences, Not Things.. 혹은, 쇼핑 안하고 1년 버티기..

스티브 잡스가 아침마다 뭘 입을까를 고민하는 것에 시간 뺏기기 싫어 같은 옷만을 여러개 준비해서 항상 같은 옷을 입었다는 스토리 등등. 여러 내용의 쇼핑을 자제시키는 글들을 읽은 기억이 난다.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 심한 소비에 너무 쓰지 말라는 익숙한 얘기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살아 있는 한 물질 포기가 쉽지 않은 40~50대 여자들이다.

갖고 싶은 게 있는 것 자체가 아주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반영하는 우리네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낭비없는 필요한 알뜰 쇼핑에 아주 강한 아줌마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아웃릿에서 헤쳐 모였다.

아.. 다행인지 불행인지, 애매해지지 않는 욕구 하나는 아직 확실하게 남아 있음을 깨닫는다.

그 날 저녁, 우리는 분위기 좋은 Lavender Bistro 라는 이태리 식당에서 저녁을 하고 호텔로 돌아와 수다, 수다를 하였다. 수다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옛날로 치면 우리처럼 이렇게 밖에 나와서 사무실 열고 일 하는 여자들은 팔자에 다 도화살이 있다는 것이라는데... ^^

심리학 전공하신 교수님으로, 주역 공부를 따로 깊게 하신 분 말씀이시다. 우리 멤버중 한 분의 어머니이시다.

가볍게 잘 놀고 내려왔다. 별 것 없는, 좀 흐릿하고 매일이 비슷한 나의 하루 그림에도, 내게, 흐르는 시간은... 성장이다. 내가 나와 친해지며 더 알아가게 되는 시간임에는 틀림없다. 나를 보고자 애 쓰니 더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주위와 소통하며 또 나를 들여다 보니 내가 더 잘 보이기도 한다.

흘러는, 더 단단해지고 더불어 함께는, 즐겁고, 유쾌한 2016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세율 일람표(Tax Rate Schedules)

세율은 일반적으로 세법의 개정이 없는한 인플레이션 율에 따라 매년 조금씩 조정된다. 다음의 세율 일람표는 2016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2016 Federal Tax Rates and IRS Marginal Tax Brackets

| Tax Rate | Single | Married Filing Jointly | Married Filing Separate Returns | Heads of Households |
|--------------------|---------------------|------------------------|---------------------------------|---------------------|
| Personal Exemption | \$4,050 | \$4,050 | \$4,050 | \$4,050 |
| Standard Deduction | \$6,300 | \$12,600 | \$6,300 | \$9,300 |
| 10% | \$0-\$9,275 | \$0 - \$18,550 | \$0-\$9,275 | \$0-\$13,250 |
| 15% | \$9,276-\$37,650 | \$18,551-\$75,300 | \$9,276-\$37,650 | \$13,251-\$50,400 |
| 25% | \$37,651-\$91,150 | \$75,301-\$151,900 | \$37,651-\$75,950 | \$50,401-\$130,150 |
| 28% | \$91,151-\$190,150 | \$151,901-\$231,450 | \$75,951-\$115,275 | \$130,151-\$210,800 |
| 33% | \$190,151-\$413,350 | \$231,451-\$413,350 | \$115,276-\$206,675 | \$210,801-\$413,350 |
| 35% | \$413,351-\$415,050 | \$413,351-\$466,950 | \$206,676-\$233,475 | \$413,351-\$441,000 |
| 39.6% | over \$415,050 | over \$466,950 | over \$233,475 | over \$441,000 |

Source: Rev. Proc. 2015-53

미국 50개주 주 정부 웹사이트 정보와 전화번호 명부

| State | Information Telephone | Web Site Address |
|----------------------|-----------------------|--------------------------------------|
| Alabama | (334)242 -1170 | www.ador.state.al.us |
| Alaska | (907)465 -2300 | www.revenue.state.ak.us |
| Arizona | (602)255 -3381 | www.azdor.gov |
| Arkansas | (501)682 -1100 | www.state.ar.us/dfa/ |
| California | (800)338 -0505 | www.ftb.ca.gov |
| Colorado | (303)238 -7378 | www.colorado.gov/revenue |
| Connecticut | (860)297 -5962 | www.ct.gov/drs |
| Delaware | (302)577 -8200 | revenue.delaware.gov/ |
| District of Columbia | (202)727 -4829 | otr.cfo.dc.gov/ |
| Florida | (904)352 -3671 | dor.myflorida.com/Pages/default.aspx |
| Georgia | (877)423 -6711 | dor.georgia.gov |
| Hawaii | (800)222 -3229 | tax.hawaii.gov |
| Idaho | (208)334 -7660 | tax.idaho.gov |
| Illinois | (800)732 -8866 | www.revenue.state.il.us/ |
| Indiana | (317)232 -4018 | www.in.gov/dor |
| Iowa | (515)281 -3114 | tax.iowa.gov |
| Kansas | (785)368 -8222 | www.ksrevenue.org/ |
| Kentucky | (502)564 -4581 | www.revenue.ky.gov/ |
| Louisiana | (855)307 -3893 | www.rev.state.la.us/ |
| Maine | (207)626 -8475 | www.state.me.us/revenue/ |
| Maryland | (410)260 -7980 | www.comp.state.md.us/ |
| Massachusetts | (617)887 -6367 | www.mass.gov/dor/ |
| Michigan | (517)373 -3200 | www.michigan.gov/treasury |
| Minnesota | (651)556 -3000 | www.revenue.state.mn.us |
| Mississippi | (601)923 -7700 | www.dor.ms.gov |
| Missouri | (573)751 -3505 | dor.mo.gov/ |
| Montana | (406)444 -6900 | revenue.mt.gov |
| Nebraska | (800)742 -7474 | www.revenue.state.ne.us/index.html |
| Nevada | (866)962 -3707 | tax.nv.gov/ |
| New Hampshire | (603)230 -5000 | revenue.nh.gov |
| New Jersey | (609)292 -6400 | www.state.nj.us/treasury/taxation/ |
| New Mexico | (505)827 -0700 | www.tax.newmexico.gov |
| New York City | (212)504 -4036 | www.nyc.gov/dof |
| New York State | (518)457 -2332 | www.tax.ny.gov |
| North Carolina | (877)252 -3052 | www.dor.state.nc.us/ |
| North Dakota | (701)328 -2770 | www.nd.gov/tax/ |
| Ohio | (800)282 -1780 | www.tax.ohio.gov/ |
| Oklahoma | (405)521 -3160 | www.ok.gov/tax/ |
| Oregon | (503)378 -4988 | www.oregon.gov/dor/ |
| Pennsylvania | (717)787 -8201 | www.revenue.pa.gov |
| Rhode Island | (401)574 -8922 | www.tax.state.ri.us |
| South Carolina | (803)898 -5000 | dor.sc.gov |
| South Dakota | (605)773 -3311 | dor.sd.gov |
| Tennessee | (615)253 -0600 | www.tn.gov/revenue |
| Texas | (800)252 -1381 | comptroller.texas.gov/taxes/ |
| Utah | (801)297 -2200 | www.tax.utah.gov |
| Vermont | (802)828 -2505 | tax.vermont.gov/ |
| Virginia | (804)367 -8031 | www.tax.virginia.gov/ |
| Washington | (800)647 -7706 | dor.wa.gov/ |
| West Virginia | (304)558 -3333 | www.revenue.wv.gov |
| Wisconsin | (608)266 -2486 | www.revenue.wi.gov |
| Wyoming | (307)777 -5200 | revenue.wyo.gov/ |

회계와 세무정보 웹사이트

정부기관 웹사이트

IRS :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연방국세청)
www.irs.gov

각종 연방국세청에서 발표되는 새로운 규정과 연방세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각종 소득세 양식과 기입방법 등 연방세법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SSA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사회보장국)
www.ssa.gov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한글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중소기업청)
www.sba.gov

모든 SBA Offices, Business Information Centers, SBA Disaster Area Offices, 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s,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 and Veterans Affairs Offices를 위한 주소와 전화번호등과 같은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SBA 대출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격요건을 수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에 관련된 각종 연방법규와 규제 내용을 수록하고, 그 개정안을 게재하고 있다.

Patent and Trademark Office (특허 및 상표 등록국)
www.uspto.gov

특허권과 상표등록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상표 등록 전 상표등록 가능여부를 찾아볼 수 있고, 등록 절차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Department of Labor (연방 노동국) ···· www.dol.gov

이 기관은 미국의 노동자를 위해서 직업안정과 평등한 고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연방정부 기관이다. 연방 노동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노동법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US Tax Court (연방 세법 재판소)
www.ustaxcourt.gov

연방 세법 재판소에 관련된 정보, 구인정보, 재판관에 대한 정보, 진행중인 케이스에 대한 정보들을 구할 수 있다.

FTB : The Franchise Tax Board (캘리포니아 주 국세청)
www.ftb.ca.gov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법인, 개인소득세와 은행 및 기업의 법인세를 징수하는 기관이다. 매년 개인, 은행 및 법인체로부터 330억달러 이상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캘리포니아 일반예산의 62%에 해당하고 있으며 매년 1,400만건 이상의 개인소득세 납부가 일어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각종 주정부 양식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DD : The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 www.edd.ca.gov

노동과 직업에 관련해서 실업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프로그램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은 액수의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으로서, EDD는 Employment Tax의 징수와 감독을 하고 캘리포니아의 1,500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위한 고용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BOE : The Board of Equalization (캘리포니아 조세 평등국) ······ www.boe.ca.gov

Sales Tax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으며, 판매세(Sales Tax)와 관련된 규정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State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정부) www.ca.gov
 California 주 정부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 www.ss.ca.gov
 주식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정보등을 수록하고 있다.

L.A. County ······ www.lacounty.gov
 회사의 상호등록, 공증, 동업, 부동산 기록, UCC 재무제표의 사본, 그리고 재산권의 기록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캘리포니아 주 노동청) ······ www.dir.ca.gov

California 주의 각종 산업과 관련된 정보 및 노동법에 관련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회계관련 웹사이트

Accounting Related Websites California Society of CPAs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협회)

····· www.calcpa.org
 California 주의 CPA 관련 업무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 www.aicpa.org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미국공인회계사 관련 업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JOURNAL OF ACCOUNTANCY
 ······ www.journalofaccountancy.com

각종 회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월간지 Journal of accountancy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California Board of Accountancy (캘리포니아 회계국) ······ www.dca.ca.gov/cba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들에 대한 각종 규정과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이외의 주에서의 공인회계사 자격증에 대한 정보는 각 해당 주의 회계국(Board of Accountancy)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회계 기준 관리국) ······ www.fasb.org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감사하며, 사용하려는 일반인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위해 재무회계의 기준을 세우고 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INTERNATIONAL NETWORK OF ACCOUNTANTS AND AUDITORS (INAA) ······ www.inaa.org

국제적으로 회계사들의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이다.

AMERICAN SOCIETY OF WOMEN ACCOUNTANTS (ASWA) ······ www.afwa.org

1938년 설립된 전문가의 모임으로 회계나 재무 분야에서 일을 하는 전문직 여성들이 전문가로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Tax Analysts (세법 분석 비영리법인) ······ www.taxanalysts.com

세금에 관련된 각종 뉴스는 물론 매일, 매주, 매월, 매분기마다 각종 세금에 관련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연방세법, 주 세법 등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홍보하는 비영리법인이다.

기타 유용한 웹사이트

CALIFORNIA ASSOCIATION OF NONPROFITS (CAN) ······ www.canonprofits.org

California내 약 1,700여개의 비영리법인들이 회원으로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발전을 도모하고있다.

LOS ANGELES VENTURE ASSOCIATION (LAVA)
 ······ www.lava.org

1985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벤처회사 혹은 중견회사들에게 재무정보, 교육, 전문적인 정보를 정기적인 모임과 컨퍼런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국비지출 감독국) ······ www.gao.gov

특정 정당이 소속되지 않고, 정부가 국가의 예산지출을 제대로하고 있는지를 의회와 국민을 대신해서 연구하고, 감독하고 분석하는 독립적인기관이다.

Roth IRA Web Site ······ www.rothira.com
 Roth IRA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고있다.

American Institute of Philanthropy (자선단체 감시 기구) ······ www.charitywatch.org

비영리법인에 기부를 원하는 이들에게 미국내에 있는 각종 비영리법인에 대한 등급을 제공하고있다. 기부자들이 원하는 기부목적에 최대한으로 부합하는 비영리법인의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기부금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기구이다.

OUR FLIGHTS HAVE ONE STOP. YOUR DESTINATION.

Daily nonstop service to Seoul
from Seattle and Detroit.



KEEP CLIMBING
 DELTA 

2015 - 2016 KACPA BUSINESS EVENTS
2015- 2016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 사업활동

- | | |
|---------|--|
| 1/15/15 | January Seminar – 4 hours |
| 1/15/15 | Form 706 & 1041 Updates, ACA & Cash Transaction Report, Individual & Business Tax Updates, Select Retirement Account Issues, Final Repair Regulation & Change is Accouting Method 3rd Board Meeting |
| 1/15/15 | 한국일보 후원 동포대상 텍스세미나 |
| 1/22/15 | Los Angeles 지역 한국일보 후원 동포대상 텍스세미나 |
| 1/27/15 | Orange County 지역 Radio Seoul 후원 동포대상 세무상담 |
| 2/10/15 | Radio Korea 후원 동포대상 세무상담 |
| 3/11/15 | April Seminar – 4 hours |
| 4/23/15 | Independence, Fraud is Committed by Desperate Individuals May Seminar – 4 hours |
| 5/21/15 | Worker’s Compensation Insutance Fraud, Foreign Currency, Bank Account and Income, Reporting and Smuggling, Merchant Cash Advances, Probation Process 4th Board Meeting |
| 5/21/15 | Bankers CPAs and Professional Golf Tournament |
| 5/30/15 | Industry Hills Golf Club |
| 6/18/15 | Installation Dinner Oxford Palace Hotel |
| 7/14/15 | July Seminar – 2 hours IRS Examination Process including updates on identity theft and FastTrack Settlement Program |
| 8/7/15 | 1st Board Meeting |
| 8/8/15 | August Seminar – 4 hours • Accounting Standards Update • Social Security, Seven Keys to Enhancing Benefits • Retirement New Thinking for New Times |
| 8/8/15 | KACPA Members’ Golf Tournament Skylinks Golf Club |
| 9/11/15 | Legacy CPAs Mixer California Country Club |

2015 - 2016 KACPA BUSINESS EVENTS

2015- 2016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 사업활동

| | |
|-----------------------------------|--|
| 9/17/15 | September Seminar 4 hours • Section 1031 Exchange • Automatic Data Entry and Workflow • Foreign Investment I U.S. Real Estate |
| 9/27/15 | 2015 KASCPA Convention |
| 9/27~9/30/15 | New York |
| 10/20/15 | October Seminar 4 hours • Section 754 Election • Accounting update • Tax Treaties |
| 10/27/15 | 2015 Bankers and CPAs Forum Oxford Palace Hotel 2nd Board Meeting |
| 11/5/15 | Professionals Mixer California Country Club |
| 11/17/15 | November Seminar – 8 hours • Captive Insurance Section 831(b) • Accounting Update • Tax Credits & Form 5472 & 5471 |
| 11/18/15 | 재미동포를 위한 역외소득, 재산신고제도 설명회 주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주최: 총영사관,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 |
| 12/10/15 | Christmas Party |
| 〈2016 Schedule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
| 1/19/16 | January Seminar – 4 hours & 3rd Board Meeting |
| 2/02/16 | 한국일보 후원 동포대상 텍스세미나 Los Angeles 지역 |
| 2/04/16 | 한국일보 후원 동포대상 텍스세미나 Orange County 지역 |
| 2/16 -3/16 | 라디오 텍스 세미나 (생방송) Radio Korea, Radio Seoul, YTN Radio FM 100.3 |
| 4/19/16 | April Seminar |
| 5/17/16 | May Seminar 4th Board Meeting |
| 5/21/16 | Bankers and CPAs Golf Tournament Industry Hills Golf Club |
| 6/23/16 | Installation Dinner Oxford Palace Hotel |

KACPA Board of Directors List 2015-2016

ALBERT D. JANG, CPA
ALBERT J. JANG, CPA
ANN H. LEE, CPA
BIHO KEVIN CHA, CPA
BYUNG CHAN AHN, CPA
CHARLES LEE, CPA
CHARLES C. LIM, CPA
CHRISTIE CHU, CPA
CHULHYUNG (Chester) BAE, CPA
DAVID S. SHIN, CPA
DOUGLAS CHONG, CPA
GARY J. SON, CPA
HANWOOK JO, CPA
HENRY S. CHI, CPA
HOON KIM, CPA
JAE SUN SONG, CPA
JAMES M. CHA, CPA
JAMES Y. LEE, CPA
JANE KIM, CPA
JINSUNG HAHN, CPA
JEONG SHIK YU, CPA

JINNIE KANG, CPA
JONG HWAN KWAK, CPA
JOONSOON CHOI, CPA
JUN CHANG, CPA
KENNETH C. HAN, CPA
KIHO CHOI, CPA
KIM ABE, CPA
KYUNG MOO KIM, CPA
MARTIN PARK, CPA
SEUNG YOL KIM, CPA
SHIN YONG KANG, CPA
STANLEY CHA, CPA
STEVEN Y. C. KANG, CPA
SUNG BUM CHO, CPA
WOHN CHUL KIM, CPA
YOON HAN KIM, CPA
LAWRENCE S. JEON, CPA
JAMES JI, CPA
JUSTIN C. OH, CPA
STEPHANIE BAE, CPA

2015-2016 OFFICERS (2015년 임원 명단)



President
Byung Chan Ahn



Vice President
Gary Son



Secretary
Stephanie Bae



Treasurer
Ann H. Lee



*Seminar
Coordinator*
Kimberly Abe



*Seminar
Coordinator*
Richard Wang



Public Relations
James Cha



Public Relations
Jinsung Hahn



Member Coordinator
Charles Lee



Member Coordinator
William Kim



Publications
Jinnie Kang



Publications
Joon Soon Ch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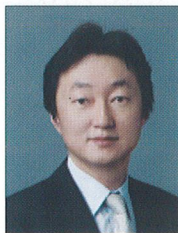


*Communication
Coordinator*
David Shin

2015 - 2016 COMMITTEE MEMBERS



Scholarship
Bi Ho C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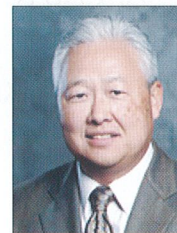
Scholarship
Chulhyung Bae



Scholarship
Kenneth Chung



Executive
Christie Chu



Executive
Steven K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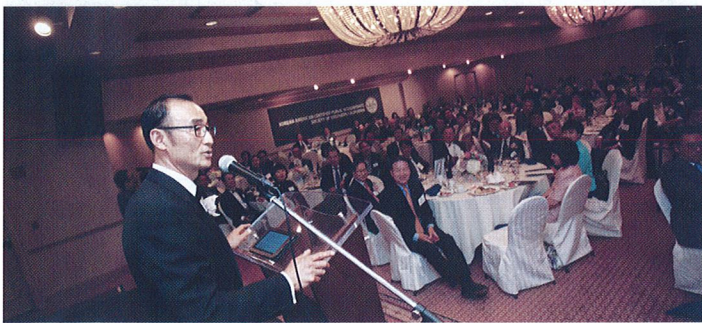


Executive
Kiho Ch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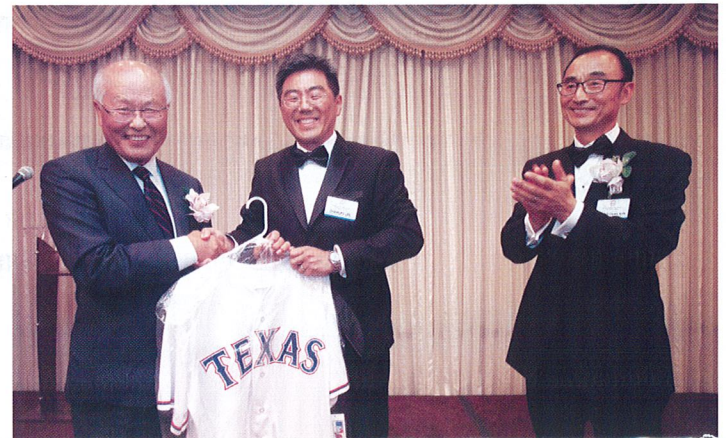
Audit
Albert Jang

33대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이취임식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KACPA) 의 안병찬 33대 회장은 “3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는 초대회장단을 비롯해 지난 32대까지 임원진들의 노력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밝히고, 이런 토대를 기초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준 높은 보수교육과 경제계 관련 전문인들과 협력하여 동포사회에 기여하는 협회로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다짐했다.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는 2015년 6월 18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Oxford Palace Hotel에서 32대/33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 행사에는 금융 및 재정전문인, 변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루었다.

장학 / 경매 기부



2015년 Bankers and CPAs Golf Tournament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에서는 2015년 5월 30일 Industry Hills Golf Club, Eisenhower Course에서 공인회계사, 금융인, 재정전문인, 변호사 등 140여명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친목을 다지는 골프대회를 가졌다. 2015년 8월 8일에는 협회 회원들의 친목 골프대회가 Skylinks Golf Club에서 열려 바쁜 업무에 시달렸던 협회원들에게 좋은 휴식 시간이 되었다.



Bankers and CPAs Forum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와 한인 은행들은 2015년 10월 27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Oxford Palace Hotel에서 한인 공인회계사들과 은행인들이 공동의 고객인 한인들의 사업에 도움을 주고 서로 협력을 하기 위한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100여명의 회원들과 금융인이 참석했으며,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각 은행 대표 패널리스트들이 참여했고, CBB Bank의 Joan Kim 행장이 적극적인 토론에 참여해서 이날 토론은 매우 생산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Legacy Mixer / Professional Mixer



남가주 공인회계사 협회에서는 33년 역사가 말해주듯 초대 임원진들을 비롯한 원로 회계사들의 노고에 감사 표시를 할 목적으로 지난 9월 22일 "Legacy Mixer"를 갖고 원로회계사들과 중견, 젊은 회계사들이 함께하는 세대간 유대를 강화하는 시간을 Wilshire Country Club에서 가졌고, 이 자리에는 70여명의 회계사들이 함께했다. 지난 11월 5일에는 공인회계사, 금융인, 재정전문인, 변호사 등 전문인 150명이 모여서 친목을 다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전문인의 밤을 Wilshire Country Club에서 가졌다.



월례 세미나

남가주 공인회계사 협회에서는 매월 협회 회원들에게 질 높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CE Credit 은 물론 회원들의 좋은 정보 제공의 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www.kacpa.org 통해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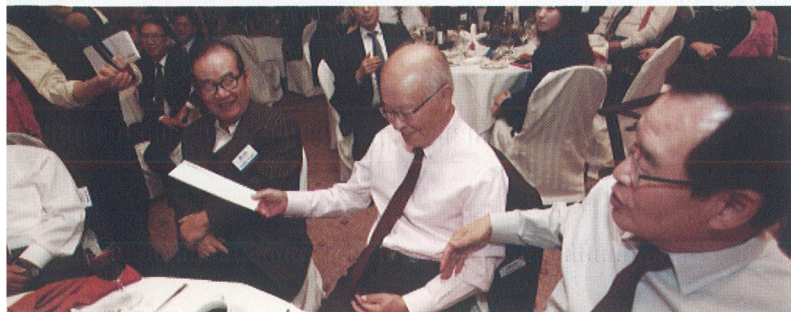
이사회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Christmas Party



2015년 12월 10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Oxford Palace Hotel에서 KACPA Christmas Party를 가졌다. 260여명의 회원 및 한인 경제계 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그동안의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친목을 다짐하는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재능있는 회원들의 장기자랑과 가면 무도회는 이날의 흥을 더욱 돋구었다.



Tax deduction and credits

1. STANDARD DEDUCTIONS

| | | |
|---|-----------|-----------|
| Married, Filing Joint Return (and Surviving Spouse) | \$ 12,600 | \$ 12,600 |
| Head of Household | \$ 9,250 | \$ 9,300 |
| Unmarried (Not Surviving Spouse or Head of Household) | \$ 6,300 | \$ 6,300 |
| Married, Filing Separate Return | \$ 6,300 | \$ 6,300 |
| Dependent Standard Deduction (Minimum) | \$ 1,050 | \$ 1,050 |

2. EXEMPTIONS

| | | |
|-------------------------------|----------|----------|
| Personal and Dependent Amount | \$ 4,000 | \$ 4,050 |
|-------------------------------|----------|----------|

3. EDUCATION PROVISIONS

| | | |
|--|----------|----------|
| American Opportunity (Modified Hope) Credit | \$ 2,500 | \$ 2,500 |
| Lifetime Learning Credit | \$ 2,000 | \$ 2,000 |
|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 Contribution | \$ 2,000 | \$ 2,000 |
|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 \$ 2,500 | \$ 2,500 |

4. NET INVESTMENT INCOME

| | | |
|--|------|------|
| Additional Tax on Net Investment Income of High-Income Taxpayers | 3.8% | 3.8% |
|--|------|------|

5. NET CAPITAL GAINS AND QUALIFIED DIVIDENDS

| | | |
|---|-----|-----|
| Taxpayers in 10% or 15% Income Tax Bracket | 0% | 0% |
| Taxpayers in 25%, 28%, 33%, or 35% Income Tax Bracket | 15% | 15% |
| Taxpayers in 39.6% Income Tax Bracket | 20% | 20% |
| Unrecaptured Gain on Real Estate (Section 1250 gain) | 25% | 25% |
| Collectibles and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 28% | 28% |

6. ESTATE AND GIFT TAXES

| | | |
|---------------------------------------|--------------|--------------|
| Estate & Gift Basic Exclusion Amount | \$ 5,430,000 | \$ 5,450,000 |
| Annual Gift Tax Exclusion (Per Donee) | \$ 14,000 | \$ 14,000 |
| Maximum Estate and Gift Tax Rate | 40% | 40% |

7. CODE SEC. 179 EXPENSE ALLOWANCE

| | | |
|-----------------------|--------------|--------------|
| Maximum Deduction | \$ 500,000 | \$ 500,000 |
| Investment Limitation | \$ 2,000,000 | \$ 2,000,000 |

8. PAYROLL TAXES

| | | |
|--|------------|------------|
| FICA or Self-Employed Combined Rate (OASDI + Medicare) | 15.3% | 15.3% |
| FICA (Employer or Employee) Rate (OASDI + Medicare) | 7.65% | 7.65% |
| OASDI (Employer or Employee) Rate | 6.2% | 6.2% |
| OASDI Maximum Base | \$ 118,500 | \$ 118,500 |
| Medicare (Employer and Employee) Rate | 1.45% | 1.45% |
| Additional Medicare Rate (High-Income Employees and Self-Employed) | 0.9% | 0.9% |

모든 투자가 불안한 상황!

Allianz 인덱스펀드연금은 *지수형 연금플랜이라
안심 할 수 있습니다!

*지수형 연금플랜이란?

Index지수가 올라가면 고객의 계좌는 증식되고
 Index 지수가 내려가면 고객의 계좌는 손해보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안전한 연금플랜입니다.



CD, IRA, SEP, 401K, 연금 (Annuity)
 Rollover 하셔서 up to 20%까지
BONUS 혜택을 받으세요!



재정투자상담가 **Grace Kang**

CA Lic. #OC02747

직통 **(213) 487-1477**

3600 Wilshire Blvd., #1614 Los Angeles, CA 90010
 gkangadvisor@gmail.com



AMSTAR
 ADVISORS

Investment ■ Insurance ■ Mortgage

원금보장+세금연기+보너스까지



Index Annuity(인덱스 펀드연금)를 해야 하는 이유!

- 원금보장 ■ 세금연기 ■ 보너스 혜택 ■ 수익률 S&P 500 INDEX
- Minimum 투자액 \$10,000 ■ NO FEE ■ No PROBATION ■ Term : 5년-10년 (복리법)
- Fortune 500-세계최대회사 중 하나 ■ 등급: AA-Very Strong

Union Bank Home Loans

Experience our commitment to outstanding personal service

Our team of mortgage consultants are here to provide you with highly personalized, end-to-end service for managing the loan process from application to funding. You can rest easy knowing an experienced and knowledgeable team is available to you every step of the way.

Find home loan options to meet your specific needs

- **Purchase Loans**
Receive our on-time closing guarantee on purchase transactions.¹
- **Refinance Loans**
Take advantage of today's rates.
- **Fixed-Rate and Adjustable-Rate Mortgages**
with competitive rates and terms.
- **Jumbo Loans²**
Jumbo loan amounts up to \$5 million, and higher case by case.
- **Portfolio Fully Amortizing Adjustable-Rate Mortgages³**
with a variety of initial fixed-rate payment periods.
- **Portfolio Interest-Only Adjustable-Rate Mortgages⁴**
Maximize your cash flow with a mortgage that requires interest-only payments during the initial fixed-rate payment period.
- **MyCommunityMortgage[®]**
Up to 95% financing allowed on single-family residences and 2-unit properties on purchase and limited cash-out refinances with lower monthly mortgage insurance premiums.⁵
- **Economic Opportunity Mortgage[®]**
Up to 95% financing on purchase and no cash-out refinances depending on property type. No private mortgage insurance (PMI) required.⁶



Contact your Union Bank mortgage consultant to obtain current rate and pricing information.



Tiffany Chang

Producing Sales Manager

NMLS ID # 459576

17951 MacArthur Blvd.

Irvine, CA 92612

Phone: 714-388-2336

christina.chang@unionbank.com

Put us to the test! Visit your local Union Bank[®] branch and speak with a mortgage consultant today.

Proven Solution

More Than 60 Million Documents Completed.

"ScanWriter is second to none, I love it... and I recommend to my fellow business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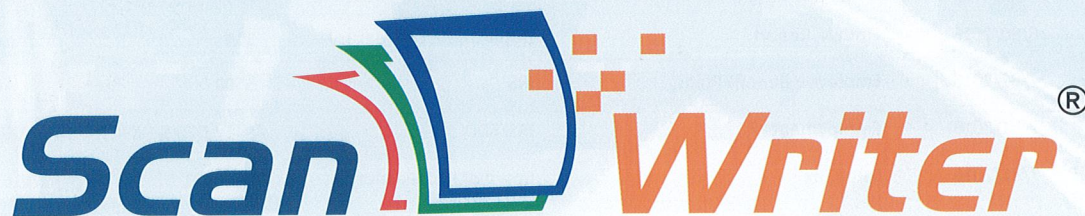
- Sergey, Newagepcs.com

"...ScanWriter took a 1.5 hour job into a 15 minutes job. LOVE IT!!!! ...BEST MONEY I EVER SPENT!!!!!"

- Nancy Faris, CB,
Advanced Certified QuickBooks ProAdvisor,
Xero Certified, Centsable Solutions, LLC

"I just so hate going back to manual input...so spoiled [with ScanWriter]"

- Sharon Kerr, Accounting Professional, Certified Bookkeeper, QB ProAdvisor



"I continue to be amazed by the service I receive from Personable. You are in a very small group of elite publishers that I would recommend without reser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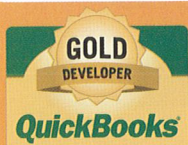
- Chuck Roberts

"... I can attest that the software has saved at least 32 hours of work and more important the work is accurate without errors..."

- Louis Avalos, EA

"ScanWriter is a MUST HAVE for QuickBooks users."

- Brian Smith, CPA



**KACPA 15% Membership Discount
plus 10% Association Donation.**

Call Now
800.688.4281
www.personable.com

세무 캘린더 (Tax Calendar) Individual, Corporation, Partnership, Non-Profit Organization Income Tax, Sales Tax, Employment Tax, Local Tax

| 월별 | 마감일 | 세금종류 | 신고 기관 | 보고양식 | 보고 기간 |
|-----------|------------|----------------------------------|------------------------|------------------|----------------------|
| January | 1/31/2016 | Sales Tax | Board of Equalization | BOE-401-A2 | 2015년도 4분기 |
| | 1/31/2016 | Employment | IRS/EDD | 941 / DE9 & DE9C | 2015년도 4분기 |
| February | 2/29/2016 | Information Return | IRS/SSA | W-2 and 1099s | |
| | 2/29/2016 | Business License | City of Los Angeles | | Renewal for 2016 |
| March | 3/15/2016 | S Corporation | IRS | 1120S | 12월 마감 |
| | 3/15/2016 | C Corporation | IRS | 1120 | 12월 마감 |
| | 3/15/2016 | Foreign Trusts with a U.S. Owner | IRS | 3520-A | |
| | 3/31/2016 | Information Return | IRS/SSA | W-2 and 1099s | Electronic Filing |
| April | 4/18/2016 | Trust and Estate | IRS | 1041 | |
| | 4/18/2016 | Partnership | IRS | 1065 | 12월 마감 |
| | 4/18/2016 | Individual Income Tax | IRS | 1040 | |
| | 4/30/2016 | Employment | IRS/EDD | 941 / DE9 & DE9C | 2016년도 1분기 |
| | 4/30/2016 | Sales Tax | Board of Equalization | BOE-401-A2 | 2016년도 1분기 |
| May | 5/15/2016 | Exempt Organizations | IRS | 990 | |
| | 5/7/2016 | Property Tax Statement | County | 571L | |
| June | 6/15/2016 | C Corporation | IRS | 1120 | 3월 마감 |
| | 6/30/2016 | FinCEN Report | Department of Treasury | 114 | |
| July | 7/31/2016 | Employee Benefit Plans | IRS | 5500 | |
| | 7/31/2016 | Employment | IRS/EDD | 941 / DE9 & DE9C | 2016년도 2분기 |
| | 7/31/2016 | Sales Tax | Board of Equalization | BOE-401-A2 | 2016년도 2분기 |
| August | 8/15/2016 | Exempt Organizations | | | Extension |
| September | 9/15/2016 | Foreign Trusts with a U.S. Owner | IRS | 3520-A | Extension |
| | 9/15/2016 | C Corporation | IRS | 1120 | 6월 마감 |
| | 9/15/2016 | C Corporation - Extended | IRS | 1120 | 12월 마감 -Extension |
| | 9/15/2016 | S Corporate | IRS | 1120S | 12월 마감 -Extension |
| | 9/15/2016 | Partnership | IRS | 1065 | 12월 마감 -Extension |
| | 9/15/2016 | Trust and Estate | IRS | 1041 | Extension |
| October | 10/15/2016 | Individual Income Tax | IRS | 1040 | Extension |
| | 10/15/2016 | Employee Benefit Plans | IRS | 5500 | Extension |
| | 10/31/2016 | Employment | IRS/EDD | 941 / DE9 & DE9C | 2016년도 3분기 |
| | 10/31/2016 | Sales Tax | Board of Equalization | BOE-401-A2 | 2016년도 3분기 |
| November | 11/15/2016 | Exempt Organizations | IRS | 990 | Additional Extension |
| December | 12/15/2016 | C Corporation | IRS | 1120 | 9월 마감 |
| | 12/15/2016 | C Corporation | IRS | 1120 | 3월 마감 -Extension |

* 마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이 마감일이 된다.